발 간 등 록 번 호
11-1051000-000112-09

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-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
-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
대한민국정부
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

2013년부터

이렇게

달라집니다

•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

대한민국정부
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

목 록

◈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◈

1. 세 제 ····· 3

○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/ 3
○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/ 4
○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 폐지 / 5

2. 금융 ····· 6

○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/ 6
○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/ 7
○ 「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」 시행 / 8
○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/ 9

3. 산업(중소기업 · 특허) ····· 10

○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단지제도 개선 / 10
○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/ 11
○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/ 12
○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/ 13
○ 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/ 14
○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확대 / 15
○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/ 17
○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/ 18
○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/ 19
○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/ 20

4. 환경 · 국토 ····· 21

○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/ 21
○ 「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 / 22
○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/ 23
○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 / 24
○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/ 25
○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/ 26
○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/ 27
○ 감정평가의 투명성 · 객관성 제고를 위한 “감정평가기준” 명확화 / 28

○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/ 29
○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 시스템 도입 / 30
○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/ 32
○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/ 33
○ 소형 · 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/ 34
○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요건 완화 / 35
○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/ 36
○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(http://nhf.mltm.go.kr) 서비스 개시 / 37
○ 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/ 38
○ 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 / 39
○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/ 40
○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/ 41
○ 지도 · 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/ 42
○ 감리전문회사의 입찰 부담 완화 및 선정 기준의 공정성 제고 / 43
○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/ 44
○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/ 45
○ 행정복합도시 예정 지역 내 외국교육 기관 설립 허용 / 46
○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/ 47
○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/ 48
○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'새만금개발청' 신설 / 49
○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/ 50
○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/ 51
○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 / 52
○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· 정비 ·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 / 53
○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(TPMS) 설치 의무화 / 54
○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/ 55
○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/ 56
○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/ 57
○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 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 / 58
○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/ 59
○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/ 60
○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/ 62
○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 방식 전환 / 63
○ 과징금 · 벌금 병과 제도 개선 / 64
○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/ 65
○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/ 66
○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/ 67

○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·폭을 변경 / 68
○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 / 69
○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 대처계획 수립 / 70
○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 / 71
○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/ 72
○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 관리 시행 / 73
○ 육상발생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대상 폐기물 축소 / 74

5. 보건복지 · 여성(법무) ····· 75

○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/ 75
○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/ 76
○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/ 77
○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/ 78
○ 음식점 외부가격 표시 등 가격 표시제도 개선 / 79
○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/ 80
○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/ 81
○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/ 82
○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/ 83
○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 확대 / 84
○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/ 86
○ 만 3~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/ 87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/ 88
○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 기관 통합 운영 / 90
○ 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 / 91
○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 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/ 92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/ 93
○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/ 94
○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/ 95
○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·관리 강화 / 97
○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 시행 / 99
○ 성폭력 피해 아동 · 장애인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/ 100
○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/ 101
○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/ 102

6. 고용노동 ····· 103

○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/ 103
○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/ 104
○ (예비)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/ 105
○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/ 106
○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 기준 세분화 / 107
○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/ 109
○ 특수학교(급)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/ 110

○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/ 111
○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/ 112
○ 최저임금액 인상 / 113
○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/ 114
○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/ 115
○ 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·기구 확대 조정 / 116
○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/ 117
○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/ 118
○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/ 119
○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/ 120

7. 행정안전(소방·경찰) ····· 121
○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시행 / 121
○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/ 122
○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/ 123

8. 보훈 · 국방 ····· 124
○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/ 124
○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 / 125
○ 평시 예비역 장교·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/ 126
○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/ 127
○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/ 128
○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제도 마련 / 129
○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/ 130
○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/ 131
○ 연대급 통합예비군 훈련장 시험 운영 / 132
○ 병 봉급 인상 / 133
○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/ 134
○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/ 135
○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/ 136
○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/ 137
○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/ 138
○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/ 139
○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/ 140
○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/ 141
○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 ·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/ 142
○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/ 143
○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/ 144
○ 「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 개정 / 145
○ 업체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체계 강화 / 146
○ 중앙신체검사소 대구 혁신도시 이전 / 147
○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/ 148
○ 해양경찰순경(전환복무) 모집 및 선발 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/ 149
○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/ 150
○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/ 151
○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/ 152

○ '유학'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 연령 상향 조정 / 153
○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허가 취소 / 154
○ 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 3월에서 2월로 변경 / 155
○ 병역명문가,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 마친 여성 등 포함 / 156

9. 교육 · 문화(방송통신) ····· 157
○ 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직원의 지방직화 / 157
○ 시 · 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 /158
○ 5세 누리과정을 만 3-4세까지 확대 시행 ('13.3월) / 159
○ 저소득층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/ 160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 강권 지원 확대 / 161
○ 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 제도 개선 / 162
○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/ 163
○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/ 164
○ 유상포인트 및 전자 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/ 166
○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/ 167
○ 청각 ·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'107 손말이음' 개통 / 168
○ 700㎒ 주파수 대역 에서 동작하는 무선 마이크의 사용 종료 / 169
○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/ 170
○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보호 인증 강화 / 171

10. 농식품 · 산림 ····· 172
○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/ 172
○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·운영 / 173
○ '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'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/ 174
○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/ 175
○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/ 177
○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 우대 확대 / 178
○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 규제 개선 / 179
○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완화 / 180
○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 ('13～'16년)으로 전환하고, 축산업 등록 대상 축종을 확대 / 181
○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/ 182
○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/ 183
○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/ 184
○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/ 185
○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/ 186
○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 개편 / 187
○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·어항법 개정 / 188
○ 수협중앙회의 정상 조합에 대한 부실 예방 대책 강화 / 189

❍ 서해5도 백령도 대 · 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/ 190
❍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기준 완화 / 191
❍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 · 일원화 / 192
❍ 비료 생산 · 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/ 193
❍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/ 194
❍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/ 195
❍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/ 196
❍ 벌채·제재·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 제도 도입 / 197
❍ 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 지도사) 자격증 발급 / 198
❍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(3 → 2km) / 199

◈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◈

○ 기획재정부 ····· 203

○ 교육과학기술부 ····· 203

1.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화 / 203
2. 시·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시행 / 203
3. 5세 누리과정을 만 3-4세까지 확대 시행 / 204
4.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/ 204
5.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/ 204
6. 교원자격 검정 강화하고, 신규채용제도 개선 / 205

○ 법무부 ····· 206

1.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/ 206
2.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/ 206
3. 친권제도 개선 / 206
4. 입양제도 개선 / 207

○ 국방부 ····· 207

1. 군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 / 207
2. 평시 예비역 장교·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/ 207
3.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/ 207
4.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/ 208
5.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제도 마련 / 208
6.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/ 208
7.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/ 208
8. 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/ 209
9. 병 봉급 인상 / 209
10.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/ 209
11.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/ 209
12.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/ 210
13. A형간염백신 접종확대 / 210
14.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/ 210

○ 행정안전부 ····· 210

1.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/ 210
2.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/ 211

○ 문화체육관광부 ····· 211

1.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/ 211
2.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/ 211
3. 유상 포인트 및 전자 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/ 211

○ 농림수산식품부 ····· 213

1.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/ 213
2.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·운영 / 213
3.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/ 213
4.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/ 214
5.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/ 214
6.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 우대 확대 / 214
7.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/ 215
8.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 / 215
9. 축산업 허가제 시행 및 가축사육업 등록제 대상 확대 / 215

10.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/ 216
11.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시행 / 216
12.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, 돼지에 확대 / 216
13. 어선표지판을 전국단위로 개선하고, 부착대상을 확대 / 216
14.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/ 216
15.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/ 217
16. 어촌어항법 개정 / 217
17. 수협중앙회의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 예방 대책 강화 / 217
18.서해5도 백령, 대·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/ 217
19.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 / 218
20.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·일원화 / 218
21. 비료 생산·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 기재 의무화 / 218
22.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/ 218
23.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/ 219
24. FTA 지원대책 성과 및 투융자계획 국회 제출 / 219

○ 지식경제부 ····· 219

1.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단지제도 개선 / 219
2.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 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/ 220
3.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비율 상향조정 / 221
4.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/ 221
5. 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/ 221

○ 환경부 ····· 221

1.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/ 221
2. 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 / 221
3. 수시점검 방법 추가 / 222
4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/ 222
5.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/ 222
6. 미세먼지 예보 / 222
7.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/ 223

○ 보건복지부 ····· 223

1.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/ 223
2.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/ 224
3.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/ 224
4. PC방 흡연 전면 금지 / 224
5. 음식점 외부가격 표시등 표시제도 개선 / 225
6.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/ 225
7.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/ 225
8.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/ 227
9.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 확대 / 227
10.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/ 227
11.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/ 227

12. 만 3~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/ 228
13.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완화 / 228

❍ 국토해양부 ····· 229

1.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/ 229
2.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/ 230
3.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도입 / 230
4.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/ 230
5. 국민주택기금 대출소득요건 조정 / 231
6. 소형·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/ 231
7.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요건 완화 / 231
8.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/ 231
9.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통합제공으로 국민편익 증대 / 232
10. 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/ 232
11.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/ 232
12.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/ 232
13.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/ 232
14. 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배포 / 233
15.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의 공정성 제고 / 233
16.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/ 234
17.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/ 234
18.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/ 235
19.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 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/ 235
20. 기업도시 개발 재투자율 하향 조정 / 235
21. 새만금개발청 설립 / 235
22.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 / 235
23.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/ 236
24. 반품차량 판매시 반품차량 고지의무 신설 / 236
25. 차량 판매·정비·폐차 내역 통지 의무 신설 / 236
26.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/ 236
27. 최고속도제한장치 적용대상 확대 / 236
28. 보행자보호를 위한 상해기준 강화 / 237
29.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 도입 / 237
30.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에게 국유지 임대 / 237
31.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/ 237
32.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/ 238
33.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/ 239
34.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 / 239
35. 과징금·벌칙 병과 제도개선 / 239
36.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/ 239
37.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실제고제 / 240
38.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일부 변경 / 240
39. 헬기장 활주로 길이·폭 / 240
40. 육상헬기장 갓길 / 241
41.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/ 241

42. 공항운영자 / 241
43.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/ 241
44.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/ 242
45.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/ 242

○ 여성가족부 ····· 243

1.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/ 243
2. 청소년지도사 ·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/ 243
3.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/ 243
4.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무기관 확대 / 243
5.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/ 243
6.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· 관리 강화 / 244

○ 고용노동부 ····· 245

1.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/ 245
2.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/ 245
3.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/ 245
4.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확대 / 245
5.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/ 246
6.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/ 246
7.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/ 246
8.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/ 246
9.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/ 247
10.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/ 247
11.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/ 247
12.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/ 247
13. 최저임금액 인상 / 247
14.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/ 247
15.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/ 248
16. 안전인증 대상 확대 / 248
17.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확대 / 248
18.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/ 248
19. 석면해체 · 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/ 249
20.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('12.11.22. 국회 본회의 통과, 12월 중 공포 예정, 공포일부터 시행) / 249
21.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/ 249

○ 방송통신위원회 ····· 249

1.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 완전 종료 / 249
2. 통신중계서비스 번호 통합 및 명칭 변경 / 250
3.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 / 250
4.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강화 / 250
5.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/ 251

○ 국가보훈처 ····· 251

1.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/ 251

○ 금융위원회 ····· 251

1.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/ 251

2.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 한도 합리화 / 252
3. 「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」 시행 / 252
4.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/ 252

○ 관세청 ····· 252

1.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사전 이수제도를 폐지 / 252

○ 병무청 ····· 253

1. 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 / 253
2.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후속처리 강화 / 253
3. 해양경찰 선발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/ 253
4.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/ 253
5.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 기준 조정 / 253
6.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/ 254
7. '유학'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 연령 상향 조정 / 254
8.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 시 허가취소 / 254
9. 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시기 변경 / 254
10.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조정 / 254
11. 예술경연대회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예술요원 추천기준 명확화 / 255
12. 사회복지시설 장의 직계비속 복무기관 지정 개선 / 255

○ 방위사업청 ····· 255

1.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/ 255
2.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/ 255
3.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/ 256
4.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/ 256
5.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/ 256
6.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/ 256
7. 「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 개정 / 257
8.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 / 258

○ 경찰청 ····· 258

1. 경범죄 처벌법 개정시행 / 258

○ 소방방재청 ····· 259

1.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/ 259
2.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/ 259

○ 산림청 ····· 260

1.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/ 260
2. 산림교육 전문가자격증발급 / 260
3.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/ 260
4. 목재펠릿 보급 대상 확대 / 261

○ 중소기업청 ····· 261

1.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 / 261

2.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/ 261

❍ 특허청 ····· 262

1. 중견기업 특허수수료감면제도 도입 / 262
2.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/ 262
3.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/ 262

❍ 식품의약품안전청 ····· 262

1.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일원화 / 262

◈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◈

'12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.

○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/ 7
○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/ 12
○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/ 13
○ 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/ 14
○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/ 32
○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(http://nhf.mltm.go.kr) 서비스 개시 / 37
○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/ 41
○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 / 52
○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/ 60
○ 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 / 91
○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/ 106
○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/ 119
○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/ 120
○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/ 138
○ 업체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체계 강화 / 146
○ 중앙신체검사소 대구 혁신도시 이전 / 147
○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/ 148
○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/ 151
○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/ 152
○ '유학'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 연령 상향 조정 / 153
○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허가 취소 / 154
○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기준 완화 / 191
○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 구역 지정범위 축소(3→2km) / 199

'13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.

1월

○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/ 3
○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/ 4
○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/ 6
○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/ 9
○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/ 17
○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/ 18
○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 수수료 확대 / 19
○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/ 20
○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/ 21

○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 배출 금지 / 27
○ 감정평가의 투명성·객관성 제고를 위한 "감정평가기준" 명확화 / 28
○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/ 33
○ 소형·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/ 34
○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요건 완화 / 35
○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/ 36
○ 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/ 38
○ 감리전문회사의 입찰 부담 완화 및 선정 기준의 공정성 제고 / 43
○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/ 44
○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/ 45
○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/ 47
○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/ 48
○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/ 50
○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(TPMS) 설치 의무화 / 54
○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/ 56
○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/ 57
○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서비스 실시 / 65
○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/ 66
○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/ 67
○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 대처계획 수립 / 70
○ 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폐기물 축소 / 74
○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/ 79
○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/ 80
○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/ 81
○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/ 82
○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/ 83
○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/ 86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/ 88
○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 운영 / 90
○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 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/ 92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/ 93
○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/ 103
○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/ 104
○ (예비)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비율 변경 / 105
○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/ 107
○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/ 109
○ 특수학교(급)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/ 110
○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/ 111
○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 요건 조정 / 112

○ 최저임금액 인상 / 113
○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/ 114
○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/ 115
○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/ 117
○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/ 118
○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/ 124
○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 / 125
○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/ 128
○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/ 129
○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/ 130
○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/ 131
○ 병 봉급 인상 / 133
○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/ 134
○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/ 135
○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/ 140
○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/ 143
○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/ 150
○ 시 · 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 / 158
○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/ 163
○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/ 167
○ 청각 ·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'107 손말이음' 개통 / 168
○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/ 170
○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/ 172
○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·운영 / 173
○ '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'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/ 174
○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 우대 확대 / 178
○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 규제 개선 / 179
○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완화 / 180
○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/ 182
○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/ 183
○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/ 185
○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/ 186
○ 수협중앙회의 정상 조합에 대한 부실 예방 대책 강화 / 189
○ 서해5도 백령도 대 · 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/ 190
○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/ 195
○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/ 196

2월

○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/ 23
○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 / 24
○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/ 25
○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 / 71
○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시행 / 121
○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/ 127

○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/ 139
○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/ 141
○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 · 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/ 142
○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/ 144
○ 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 3월에서 2월로 변경 / 155
○ 저소득층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/ 160
○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/ 164
○ 유상포인트 및 전자 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/ 166
○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보호 인증 강화 / 171
○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('13~'16년)으로 전환하고, 축산업 등록 대상 축종을 확대 / 181

3월

○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단지제도 개선 / 10
○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/ 72
○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/ 76
○ 만 3~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/ 87
○ 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·기구 확대 조정 / 116
○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/ 123
○ 「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 개정 / 145
○ 5세 누리과정을 만 3-4세까지 확대 시행 ('13.3월) / 159
○ 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 제도 개선 / 162

4월

○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 확대 / 84
○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/ 137
○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·어항법 개정 / 188
○ 비료 생산 · 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/ 193

5월

○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/ 184
○ 벌채·제재·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 제도 도입 / 197

6월

○ 「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」 시행 / 8
○ 지도 · 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/ 42
○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 / 58
○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/ 59
○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/ 62
○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/ 78
○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/ 94
○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/ 95

○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·관리 강화 / 97
○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 시행 / 99
○ 성폭력 피해 아동·장애인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/ 100
○ 평시 예비역 장교·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/ 126
○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/ 175
○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 개편 / 187
○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·일원화 / 192
○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/ 194

7월

○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/ 51
○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 방식 전환 / 63
○ 과징금·벌금 병과 제도 개선 / 64
○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 관리 시행 / 73
○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/ 77
○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/ 100
○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/ 102
○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/ 136

8월

○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/ 29
○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/ 55

9월

○ 「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 / 22
○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 시스템 도입 / 30
○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'새만금개발청' 신설 / 49
○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·정비·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 정보 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 / 53

10월

○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/ 75
○ 700㎒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 마이크의 사용 종료 / 169

12월

○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/ 11

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'1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

○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 폐지 / 5
○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확대 / 15
○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/ 26
○ 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 / 39
○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/ 40
○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/ 46

❍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·폭을 변경 / 68
❍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 / 69
❍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/ 122
❍ 연대급 통합예비군 훈련장 시험 운영 / 132
❍ 해양경찰순경(전환복무) 모집 및 선발 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/ 149
❍ 병역명문가,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 마친 여성 등 포함 / 156
❍ 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직원의 지방직화 / 157
❍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/ 161
❍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/ 177
❍ 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 지도사) 자격증 발급 / 198

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
1. 세 제 ····· 3
2. 금 융 ····· 6
3. 산업(중소기업 · 특허) ····· 10
4. 환경 · 국토 ····· 21
5. 보건복지 · 여성(법무) ····· 75
6. 고용노동 ····· 103
7. 행정안전(소방 · 경찰) ····· 121
8. 보훈 · 국방 ····· 124
9. 교육 · 문화(방송통신) ····· 157
10. 농식품 · 산림 ····· 172

1. 세 제

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
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
(☎ 02-2100-3916)

▣ 공정과세구현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
- 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%에서 10%로 인하되고,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현재 20%에서 40%로 변경됩니다.
-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·비치하여야 하고, 장부의 기록·비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(10%)가 부과됩니다.
- 또한,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폐지합니다. 이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·등록면허세·레저세 등의 부가세로서, 이미 본세인 취득세 등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세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.

<2013년도 지방세 가산세 제도개선>

▸ 추진배경 : 납세자 의무해태 정도에 따른 가산세율 차등화로 공정과세 구현

▸ 주요내용
① 일반무신고 가산세(20%), 과소신고 가산세(10%), 부정 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(40%)
② 장부 기록·비치의무 위반 가산세(10% 신설)
③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폐지

▸ 시행일 : 2013.1.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중)

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
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
(☎ 02-2100-3926)

▣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서민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12년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하고 13.1.1부터 지방세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.

-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(취득세 50% → 75%)하고,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(재산세 50% 감면)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·확대하였습니다.

  *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(32개, '12.5월 기준)에 대해서만 75% 적용, 기타(50개) 50% 적용 중

- 다자녀가구(18세 미만 3자녀 이상)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(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) 감면일몰 기한을 2012년말에서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

-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·보유하는 임대주택에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2년말에서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 조치하였습니다

- 13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내수활성화,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자녀양육 부담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※ 시행일 : 2013.1.1(잠정, '12.12.28현재 법사위 계류중)

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중 기본교육 사전이수 의무 폐지

관세청 수출입물류과
(☎ 042-481-7906)

▣ 보세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인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수험자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.

- 지금까지 일반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하여 보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
- 2013년부터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3년 이상의 보세화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<2013년도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이수요건 폐지>

▸ 추진배경 :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완화를 통한 수험생 편의제공

▸ 주요내용
①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인 기본교육 사전 이수 제도를 폐지함

▸ 시행일 : 2013년(잠정, 개정안 국회 심의중)

2. 금 융

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

금융위원회 보험과
(☎ 02-2156-9831)

▣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, 자기부담금 다양화,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'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'을 제시합니다.

*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: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%를 보장(기존 90%, 100%)하는 상품으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가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

-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을 원할 경우 가입·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'13.1월부터 의무화하고,
-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%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외에 자기부담금 20% 상품을 출시하여,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보험료·보장수준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또한,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변경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의료환경 변화내용 등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고, 비현실적인 보험기간(보장내용 변경주기)을 최대 15년 등으로 현실화하여 과장광고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위원회소식〉보도자료〉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
금융위원회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위원회소식〉보도자료〉보험업감독규정 개정

<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>

▸ 추진배경 :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요인·과잉진료 억제 등

▸ 주요내용
①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
② 보험료 변경(갱신)주기 단축, 보험기간 현실화
③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 등

▸ 시행일 : 2013.1.
※ 단, 기존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'13.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

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

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
(☎ 02-2156-9856)

▣ 신용카드 남발·남용 등 제반 문제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 하였습니다.

- 일정한 신용도(개인신용 1~6등급)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(만 20세 이상, '13.7월부터 19세 이상)에 한하여 카드가 발급됩니다. (신규발급시부터)

  - 다만, 저신용자(개인신용 7등급 이하)에 해당되더라도,
    (ⅰ)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'월 가처분소득(월 소득-월 채무상환금)이 50만원 이상' 이거나
    (ⅱ) 직불기반 겸용카드(체크·소액신용)의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카드가 발급 가능합니다.

-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책정됩니다. (신규발급 및 기존 회원의 카드 갱신시부터)

  - 카드 발급 이용한도는 ① 가처분소득에 근거한 이용한도액과 ② 직전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되며,

  - 결혼·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한도 상향 조정이 허용됩니다.

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〉알림마당〉보도자료〉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

<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방안>

▸ 추진배경 : 신용카드 남발·남용 등 신용카드를 둘러싼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 유도

▸ 주요내용
① 일정한 신용도(개인신용 1~6등급)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
② 가처분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

▸ 시행일 : 2012.10.15. (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)

「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」 시행

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
(☎ 02-2156-9475)

▣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%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.

-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, 다단계 대부중개행위 등이 대부시장에서 서민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

- 정부는 「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」 시행을 통해 높은 중개수수료가 서민들의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.

  - 다만, 대통령령(시행령)상 한도는 '13.상반기 중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.

※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해당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대부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(다만, 여신금융기관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.)

<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>

▸ 추진배경 : 과도한 대출금리 부담의 구조적 원인이 되는 높은 중개수수료율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

▸ 주요내용

① 대부중개수수료를 5%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

▸ 시행일 : 2013.6. 12

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

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
(☎ 02-2156-9874)

▣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이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- 동 법은 기업어음의 문제점(실물발행으로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며, 어음법 적용 등으로 분할유통 및 초단기발행이 곤란)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 「전자단기사채」를 도입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.

-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(CP)의 단점인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,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, 이에 따라 유통시장도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① 전자등록 및 유통을 통해 실물CP 발행으로 인한 문제 해결

- 위·변조 및 분실 등 실물CP 발행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사무부담이 해소되며 증권·대금 동시결제가 가능하여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음

- 초단기물의 발행이 가능해져 기업 자금운용이 고도화·정밀화되고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CP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 극복

② 자유로운 분할유통을 통해 유통시장 발전 및 투자자 확대

- 어음법이 적용되어 권면분할이 불가능했던 CP와 달리 1억원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유통이 가능하여 유동성이 크게 제고

- 유통 활성화시 투자자 기반이 확대되고 발행기업은 투자자 모집이 보다 용이해져 시장규모 확대 기대

③ 정보공개에 따른 시장 투명성 강화

- 투자자는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어 신용리스크 관리가 쉬워지며 정책당국은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이 가능

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〉보도자료〉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

3. 산업(중소기업 · 특허)

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단지제도 개선

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
(☎ 02-2110-5302)

▣ 산업의 융·복합화,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지식서비스업종 중 자연과학 연구개발업, 출판업 등을 비롯한 11개 업종에 대해서만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였으나, '12년 12월부터는 공학 연구개발업, 경영컨설팅업 등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확대됩니다.

- 아울러, '13년 3월부터는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개 이상의 업종이 동일한 입주구역에 배치되도록 산업단지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.

<2013년도 산업단지제도 개선>

▸ 추진배경 : 산업의 융·복합화, 지식서비스산업 발전 등 산업구조변화 반영

▸ 주요내용

① 지식서비스산업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 확대(2012.12월 시행)

②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의 통합배치 허용(2013.3월 시행)

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

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
(☎ 02-2110-5661)

▣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(이하 LMO법이라 함)」 상에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항이 없었으나,
  * 국내 C기업에서 "당"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개발(유전자변형미생물 활용 국내 첫 사례), 식약청에 위해**성심사를 요청하였으며, 식약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위해성심사**를 완료하고, 생산승인한 바 있음('11.6월)
- '13년 12월부터는 개정 LMO법 제22조의3과 제22조의4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·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,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.
  * LMO법 제22조의3(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: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, LMO법 제22조의4(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) :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

▣ 그 밖에,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자도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(개정안 제7조의2),

▣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할 때 폐쇄신고를 하도록 하며(개정안 제22조),

▣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·생산시설, 보관장소,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.(개정안 제26조의2)

<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>

▸ 추진배경 :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 등으로 활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화

▸ 주요내용
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 신설
②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(위해성심사 포함) 제도 신설

▸ 시행일 : 2013.12.

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

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
(☎ 02-2110-5495)

▣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(강원랜드)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이익금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올려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- 지금까지는 강원랜드 이익금 중 100분의 20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하였으나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100분의 25로 납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

<2013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>

▸ 추진배경 :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

▸ 주요내용

①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(기존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0%→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%)

▸ 시행일 : 2012.11월

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

지식경제부 안전품질정책과
(☎ 02-509-7238)

▣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이 이행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.

- 이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*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,

  * 리콜이행 실적 : 미국 ('08) 564건, ('09) 466건, ('10) 402건
    일본 ('08) 106건, ('09) 94건, ('10) 103건

- 해당사업자가 동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<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>

▸ 추진배경 :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국내유통 방지를 통해 국내소비자 보호

▸ 주요내용

① 외국에서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 조치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한 사업자

② 외국에서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 조치된 제품을 수출한 국내 사업자

▸ 시행일 : 2012.8.24.

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

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
(☎ 02-2195-1115)

▣ 글로벌 경제 불안 등 우정사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등의 외부 위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"우체국예금보험 자금의 운용 지원" 등 높은 수준의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*에 업무를 위탁하여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나,

  * 한국우편사업진흥원, 우체국금융개발원, 우체국물류지원단, 우체국시설관리단

- 글로벌 경제 불안 등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에게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여 업무위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  ** 업무위탁 확대 내용
  - 공익사업운영, 우체국보험 계약관리,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, 결산 · 회계 등 다수
  - 세부내용 : 『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』 제14조(업무의 위탁) 참고

☞ (관련법령)www.law.go.kr에서 "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" 검색 (제14조)

<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 위탁 확대>

▸ 추진배경 :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업무 전문성 제고 필요

▸ 주요내용

①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추가 위탁*확대(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**에 위탁)

* 공익사업운영, 우체국보험 계약관리,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, 결산 · 화계 지원 등

** 한국우편사업진흥원, 우체국금융개발원, 우체국물류지원단, 우체국시설관리단

▸ 시행일 : 2012.11.6.

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

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
(☎ 042-481-4453)

▣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75%를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기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지역사업, 전국사업, 국제사업, 중점사업,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,
- '13년 1월부터는 첫걸음기술개발, 도약기술개발사업으로 단순화하여 지원합니다.

*산학연 첫걸음기술개발 : 국가 R&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지역내 대학·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경우,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(기존 지역사업을 개편)

**산학연 도약기술개발 : 성장정체 또는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도약·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 비용을 지원(기존 전국, 국제, 중점,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합 개편)

▣ 수요자 선택방식을 도입합니다.

- 기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대학·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, '13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신청한 후 공동연구 할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.

▣ 중소기업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.

-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비용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, 기술역량 등을 진단전문가들이 진단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현재 여건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- 중소기업은 간단한 기업현황과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작성한 사업계획서(3쪽)를 지방중소기업청, 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청 건강관리 진단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.

- 또한, 기존에는 연 1회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'13년부터는 1월~ 9월까지 매월 신청·접수를 받아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

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(☎ 042-481-4491)

▣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협업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 공동구매, 공동마케팅, 공동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.

• 그간 나들가게(동네슈퍼)에 대한 공동구매, 시설개선 등 가시적인 조직화 지원 성과에 따라, 2013년 1월부터는 동네빵집·세탁소·꽃집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협업사업을 통한 공동의 이익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.

- 자발적인 협업체에 대해서는 교육과 진단지도 코칭을 실시하고, 협동조합 설립이후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.

<2013년도 협업화 지원사업>

▸ 추진목적 :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공동의 이익창출 도모

▸ 주요내용

① 지원분야 : 공동브랜드, 공동마케팅, 공동설비, 공동구매, 기술개발 등

② 지원업종 : 빵집제과, 세탁소, 꽃집, 이미용, 공예, 가구 등 10~20개 업종 우대(시범운영)

③ 지원규모 : 협동조합 당 일정규모(예시 : 1억원 한도) 한도 내 (국비 80%, 자부담 20%)

④ 지원절차 : 자발적협업체 신청 → 교육·컨설팅 → 조합설립 → 사업신청 → 선정 → 지원 → 성과

▸ 시행일 : 2013.1.

※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직후 공고 후 즉시 시행 예정

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
(☎ 042-481-5195)

▣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해 출원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합니다.

- 「2조 달러 경제와 희망 일자리 만들기 중견기업 3000+ 프로젝트」 추진전략 지원을 위해 「산업발전법」상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의 출원료·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%를 감면할 계획입니다.
  ※ 중견기업: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소속회사가 아닌 기업
- 중견기업의 감면혜택은 '13.1.1. 시행 후 출원,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.

<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>

▸ 추진배경 :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고,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

▸ 주요내용
①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의 출원료·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% 감면
② 2013.1.1.부터 출원,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

▸ 시행일 : 2013.1.1.

특허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
(☎ 042-481-5195)

▣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현재 기업은행에 농협은행을 추가하여 확대합니다.

- 현재 특허청에서는 사전에 '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'를 제출한 고객의 금융기관(기업은행) 예금계좌에 한해 '모든 특허수수료'를 국고로 이체하는 자동납부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, 고객이 출원서, 심사청구서, 납부서 등을 제출할 때 자동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  ※ (A type) 출원료, 심사청구료, 설정등록료, 연차등록료, 심판청구료 등을 1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
  (B type) 4년차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하는 경우

- 고객의 특허수수료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'13.1.1.부터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점포 수가 많은 농협은행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.

▣ 자동화기기(ATM)에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현재의 연차등록표 뿐 아니라 설정등록표도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.

- 현재 농협 자동화기기(ATM)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는 연차등록료뿐입니다.

- 고객의 특허수수료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'13.1.1.부터 농협 자동화기기(ATM)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설정등록료까지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.

<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>

▸ 추진배경 :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수수료 납부 다양화 및 고객의 납부편의 제고

▸ 주요내용
①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현재 기업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추가 확대
② 농협 자동화기기(ATM)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현재 연차등록료에서 설정등록료로 추가 확대

▸ 시행일 : 2013.1.1.

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
(☎ 042-481-8238)

▣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자출원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신청시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하여 종전의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을 폐지하고, 등록된 인증 업체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사전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허청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해 드렸으나, 본인 대면 없이 신분증 첨부만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명의도용 등에 취약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, 2013년 1월부터는 인증체계를 강화하여, 특허청에서 자체적인 인증서 발급은 중단하고 공인인증서(범용, 은행용 등)를 등록해야만 전자문서 이용신고가 가능합니다.

* 특허청인증서와 동일하게 PCT 인증서도 2013년 1월부터 발급이 중단

- 다만, 기존에 발급받은 특허청 인증서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
- 또한, 보다 안전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하여 특허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'특허청 전용 공인인증서'를 별도로 제공(유료)하고 있습니다.

▸ 추진배경 :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하여 특허청 인증체계 강화

▸ 주요내용
① 특허청 자체 인증서 발급 폐지(기존 발급자는 '13년 한시적으로 이용가능)
② 공인인증서로만 전자문서 이용신고 가능

▸ 시행일 : 2013.1.1.

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

환경부 물환경정책과
(☎ 02-2110-6822)

▣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기준 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.

-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에 1,4-다이옥세인, 포름알데히드, 헥사클로로벤젠 등 3개 항목을 추가하고,
- 또한, 생활환경기준에 총유기탄소량(TOC) 항목을 추가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.

<2013년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>

▸ 추진배경 :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준 항목 확대

▸ 주요내용
①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3개 추가(17개 → 20개)
- 1,4-다이옥세인, 포름알데히드, 헥사클로로벤젠
②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(TOC) 항목 추가
- 신속·정확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방법을 추가

▸ 시행일 : 2013.1.

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
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
(☎ 02-2110-6960)

▣ 2013년 9월 27부터 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(DNOP, DINP, TBT, 노닐페놀)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('12.9.27 제정)

※ DNOP(Di-n-Octylphthalate, 다이-n-옥틸 프탈레이트), DINP(Di-isononylphthalate,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), TBT(Tributyltin compounds, 트라이뷰틸주석), 노닐펠론(Nonylphenol)

- DNOP, DINP의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*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,

* 전이 : 제품에 □유□ □경유해인자가 경구(□는 행위), □부, □입을 □해 사□의 □으로 □□□ 수 있는 □

- TBT, 노닐페놀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되어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의 취급제한*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.

* □급제한물질 : 특정용도로 사용□는 경우 위해□이 □다고 인정□ □ 용도로의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, □장,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(유해화□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)

-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동 제도의 시행으로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>

▸ 추진배경 :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

▸ 주요내용

① 환경유해인자 4종(DNOP, DINP, TBT, 노닐페놀)의 사용제한 기준 설정

- DNOP, DINP : 전이량(경구, 경피) 기준, TBT, 노닐페놀 : 함량기준

▸ 시행일 : 2013.9.27.

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

환경부 교통환경과
(☎ 02-2110-6859)

▣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.

- 이를 통해 기존 수시점검(측정장비 단속 및 비디오 단속)의 비효율성(강제정차로 인한 국민 불편, 사고위험 등) 및 지자체 단속실적 저조 문제를 개선·보완할 계획입니다.

- 2013년 2월부터 환경부는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 및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실시하며, 2014년 이후 대상차량 및 지역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  - 참고로, 지자체(특·광역시 및 시·군·구)에서는 기존의 수시점검 방법인 측정장비 단속과 비디오 단속을 실시합니다.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〉법령/정책〉법령정보〉입법·행정예고〉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
<수시점검 개선 주요내용>

▸ 추진배경 : 측정장비를 이용한 강제정차식 수시점검의 국민 불편·불만, 차량정체 유발, 교통사고 위험 및 지자체의 단속률 저조 문제 개선·보완

▸ 주요내용

①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방법으로 원격측정을 추가(수도권 시범실시)

- 변경전 : 측정장비 노상단속, 비디오 단속(지자체)
- 변경후 : 측정장비 노상단속, 비디오단속(지자체) + 원격측정기 추가(환경부)

▸ 시행일 : 2013.2.2.

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

환경부 교통환경과
☎ 02-2110-6859)

▣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

-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차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정비·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- 전문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하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.

  - 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·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관할 특·광역시 및 시·군·구에 제출하여야 하며, 특히 정밀검사 지역의 경우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.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〉법령/정책〉법령정보〉입법·행정예고〉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
<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주요내용>

▸ 추진배경 :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 시행

▸ 주요내용

①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차량 및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담당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시행

▸ 시행일 : 2013.2.2.

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

환경부 교통환경과
(☎ 02-2110-6809)

▣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, 농민 건강보호 및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.

-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30% 이상을 차지하는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는 건설기계에 국한되는 등 미흡하였으나, 농업기계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 신설은 통하여 2013년 2월부터는 농업기계에도 배출가스 규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
  ※ 이동□□원 □ □출 의 NO□ 34%, PM 43%가 비도로이동□□원(건설기계, □업기계 등)에서 □출(□09년 CAP□□ 자료)

  - 이에 따라 2013년에는 트랙터, 콤바인 2종에 대하여 Tier-3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, 2015년에 Tier-4 기준으로 강화하며, 규제대상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따라서 농업기계 제작·수입업체는 2013년 2월부터 제작·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홍보>보도자료>농업기계 배출가스, 2013년 2월부터 단계적 규제 시행

<2013년도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도입>

▸ 추진배경 :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농업기계에 대한 규제제도 도입

▸ 주요내용
① 트랙터, 콤바인 Tier-3 기준 적용(원동기 출력별 적용시기 차등)
② 업체는 농업기계 제작·수입전에 환경인증 의무화(인증기관 : 국립환경과학원)

▸ 시행일 : 2013.2.

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

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
(☎ 02-2110-6778)

▣ 2013년부터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, 향후 단계적으로 대기오염 예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는 8대 시도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, 2013년부터 수도권에 한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.

  - 2013년 한해 동안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, 2014년 이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예보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또한, 예보항목을 미세먼지(PM10)에서 초미세먼지(PM2.5)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※ 대기□경보전법 제7조의2(대기□□ □□ 발표) :
□경부장관은 대기□□으로 인한 국□의 건□□재산이□ 동식물의 생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□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□□도를 □□하고 □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.

<2013년도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 추진>

▸ 추진배경 : 국가 대기오염 예보제 전국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

▸ 주요내용
① 미세먼지 당일 예보
② 병원,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 전파
(특히, 대기오염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)

▸ 시행일 : 2013년중(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완료 예정)

▸ 근거 :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(대기오염 예측·발표)

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

환경부 폐자원관리과
(☎ 02-2110-6943)

▣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(음폐수)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계획입니다.

- 그 동안 정부에서는 2006년 런던의정서 발효에 따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,
- 이의 일환으로 2011년 12월 음폐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,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가 시행됩니다.

▣ 향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함은 물론 음폐수 자원화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화를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.

<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>

▸ 추진배경 :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,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 유도

▸ 주요내용

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(음폐수)의 해양배출 금지 및 전량 육상처리 전환

▸ 시행일 : 2013.1.1.

감정평가의 투명성·객관성 제고를 위한 "감정평가기준" 명확화

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
(☎044-201-3424)

▣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.

-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을 전부개정(국토해양부령, '13.1.1. 시행)하여,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, 누구나 감정평가서를 통해 가격산정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,

  - 「감정평가 실무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)을 제정('13년초)하여 감정평가의 방법·절차 및 윤리규정을 획기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

▣ 또한,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.

- 「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을 개정(국토해양부고시, '13.1.1. 시행)하여 공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업무량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산정되는 종량방식이 일부 도입됩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①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 ②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

<2013년도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추진 내용>

▸ 추진배경 : 감정평가기준 객관화·투명화, 감정평가 업무 양과 수수료의 연계 등을 통해 감정평가의 품질을 개선하고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

▸ 주요내용

① 감정평가의 원칙 및 절차 규정(감정평가에 관한 규칙)

② 목적별·물건별 감정평가방법 및 윤리 규정(감정평가 실무기준(안))*

③ 공익사업 보상평가 수수료 산정 시 종량제 방식 도입(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)

▸ 시행일 : 2013.1.1.

* 감정평가 실무기준(안)은 제정추진중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중('13년초 시행예정)

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

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
(☎ 044-201-3480)

▣ 2013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3개 지역에 확대·실시됩니다.

-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, '일사천리'로 업무를 끝낸다는 의미로 「일사편리」를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게 됩니다.

- 지금까지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건축물 대장,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.

-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.

- 또한, 다양한 부동산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, 금융, 창업, 건축, 경매, 거래 등의 국민의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지며, 행정기관 방문 절차 및 인·허가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국토해양뉴스〉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

<2013년도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>

▸ 추진배경 : 다수 공부의 분산관리 및 중복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개선

▸ 주요내용
①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
②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내용 열람
③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

▸ 시행일 : 2013.8.(예정)
※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 종합공부 전국확산 실시

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 시스템 도입

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
(☎ 044-201-4651)

▣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공개 정보가 없었으나, 2013년도부터는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체계 마련과 토지소유자 등에게 추진 사항 등을 공개하기 위한 특화된 독립시스템이 구축·운영 됩니다.

  -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사업지구 지정, 추진현황 경계결정 등 일련의 업무를 시스템화 하여 사업관리와 함께, 새로운 지적공부, 일필지조사서 등을 국민에게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-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(PPLIS)을 도입하여, 사업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,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소관청에 구축하여 갈등 요인을 사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  * PPLI□(Public Participation Land In□ormation □ystem, 국□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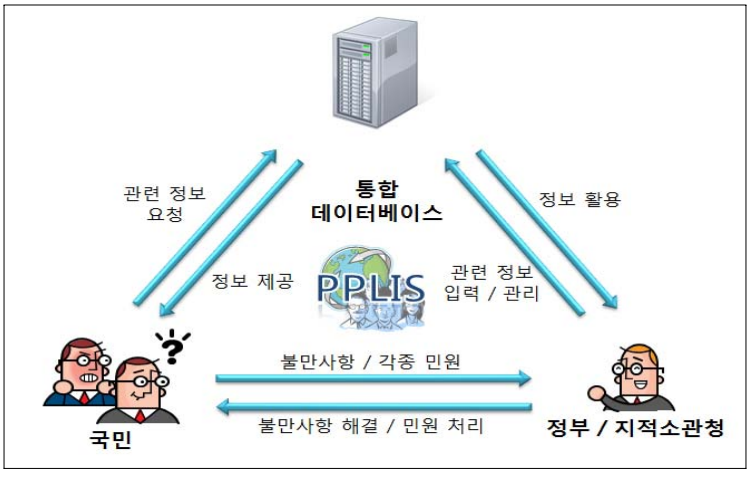

<PPLIS 운영계획 모델>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
<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>

▸ 추진배경 :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

▸ 주요내용

①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체계 마련

② 토지소유자 등에게 추진사항 등을 공개하기 위한 특화된 독립 시스템 구축

▸ 시행일 : 2013.9.(잠정)

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▣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.5%p 내외로 인하하고,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.5%p 내려 ’ 12.12.21부터 시행됩니다.

-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·예금 금리가 낮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자·서민전세자금(현행 연4.0%),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(현행 연4.2%), 근로자·서민주택구입자금(현행 연5.2%)의 대출금리를 0.5%p 내외* 인하하였으며,

구 분		변경전	변경후	비 고
수요자	근로자서민 전세자금	4.0%	3.7%	<우대금리 조정> - 다자녀(1.0→0.5%), 다문화·장애인·고령자 등(0.5→0.2%) (신규분부터 적용)
	근로자서민 구입자금	5.2%	4.3%	
	생애최초 구입자금	4.2%	3.8%	
사업자	공공분양 건설자금	5.0 ~ 6.0%	3.8 ~ 4.0%	민간사업자 4.8%(60㎡이하)
	공공임대 건설자금	3.0 ~ 4.0%	2.7 ~ 3.7%	민간사업자 2% 지원중(‘13년말)
	국민임대 건설자금	3.0%	2.7%	-

- 청약저축(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포함)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.5%p씩 인하하였습니다.

구 분	가입기간 1년미만	1년이상 2년미만	2년이상
변경전	연 2.5%	3.5%	4.5%
변경후	연 2.0%	3.0%	4.0%

* 「주□공급에관한□□」 개정(12.21) * 기존계□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

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
<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>

▸ 추진배경 :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및 시중금리 추세 반영

▸ 주요내용
① 근로자·서민전세자금(현행 연 4.0%),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(현행 연 4.2%), 근로자·서민주택구입자금(연 5.2%) 등 대출금리 0.5%p 내외 인하
② 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 이자율 0.5%p 인하

▸ 시행일 : 2012.12.21.

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▣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·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·조정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.

- 그간 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산정시, 상여금·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,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,
-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,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〈 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 〉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근로자 서민 전세자금	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* 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	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4천만원 이하 * 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
근로자 서민 구입자금	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*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	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4천만원 이하 *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
생애최초 구입자금	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	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5천5백만원 이하

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국토해양뉴스〉보도자료〉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
<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>

▸ 추진배경 : 실제 가구소득 반영 및 직종간 소득산정의 불평등 해소

▸ 주요내용
①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·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·조정

▸ 시행일 : 2013.1.2

소형·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▣ 2013년 1월부터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됩니다.

- 현행 가점제*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가 원칙이나, 유주택자라도 소형·저가주택**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
  * 가점항□(84점) : 무주□기간(32점), 부□가□수(35점), 입주자□□ 가입기간(17점)

  ** 무주□ 인정기준 : 전용60□이하□공시가□ 5천만원이하□10년이상 보유

-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요건은 '7천만원 이하'로 상향하고, '10년이상 보유' 요건은 폐지하였습니다.

▣ 이는 2007년에 정한 무주택 인정기준을 현실화하여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, 주거상향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취지입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<소형·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>

▸ 추진배경 : 소형·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현실화

▸ 주요내용

①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소형·저가주택의 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을 완화

- (주택공시가격) 5천만원이하→7천만원이하, (보유요건) 10년 이상 보유→폐지
- (전용면적) 60㎡이하→존치

▸ 시행일 : 2013.1.(잠정,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)

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▣ 2013년 1월부터 주택청약 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착오기재*에 대한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, 당첨자로 관리 및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제재**를 부과해 왔으나,

  * □□기재 사례: 청약□위, 주□소유여부, 세대주 및 해당 □주지, 재당□제한 등

- 착오기재의 고의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, 당첨취소 외에도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불이익이 과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

▣ 앞으로는 청약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부적격 당첨된 경우, 본인의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취소와 일정기간 청약제한만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하였습니다.

  * 당□은 □소하□, 당□사실을 □제하고, 청약□장 □□은 유지, 다만, 일정기간 청약제한(당□일로부터 1년(과밀□제□역에서 당□□ 경우 2년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<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>

▸ 추진배경 : 착오기재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청약 제한 완화

▸ 주요내용
①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소명여부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하여 운영
② 착오기재의 고의과실여부 등의 판단 등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착오기재 소명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청약제한

▸ 시행일 : 2013.1.(잠정,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)

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'영주'하고 있는 개인(재외동포)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.

- 지금까지는 외국인 주거안정을 위해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'외국의 국적을 보유'하고 있는 개인에 한해 우선 공급하여,
- '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' 개인(재외동포)은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.

▣ 이는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안정적 국내정주 지원을 통해 국내 경제·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정보마당〉법령정보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<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>

▸ 추진배경 :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

▸ 주요내용

① 외국인 주택단지에는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이 우선공급 대상이었으나, 동 대상을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확대

▸ 시행일 : 2013.1.(잠정,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)

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(http://nhf.mltm.go.kr) 서비스 개시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☎ 044-201-3338)

▣ 앞으로는 국민주택기금과 관련된 정보를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(http://nhf.mltm.go.kr)」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-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, 청약제도, 주택채권 등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▣ 그간 주택기금 관련 정보는 국토부·기금 취급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찾기 어렵고, 이마저도 정확도가 낮아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나,

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」을 통해 정확한 주택기금 관련 정보가 통합 제공됨에 따라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▣ 이와 함께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시, 상품별 대출조건·절차·필요서류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,

- 그간 제도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청약가점제도 이용자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개편,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, 주택 매물/시세정보, 분양정보, 내집마련 도우미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국토해양뉴스〉보도자료〉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

<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서비스 개시>

▸ 추진배경 :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 통합제공으로 국민편의 증대

▸ 주요내용

① 전세자금 대출, 청약제도, 주택채권 등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 구축 및 서비스 제공

▸ 시행일 : 2012.12. 오픈(http://nhf.mltm.go.kr)

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
(☎ 044-201-3369)

▣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입주민의 자율이 크게 확대됩니다.

• 지금까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민의 직선제로만 선출이 가능하였으나,

- 앞으로는 관리규약에 정하게 되면, 동별 대표자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도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선거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.

- 아울러 그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는 최대 2회, 4년간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었으나, 입주민의 자율성 확대로 앞으로는 2회, 4년간 재임 후 1회 쉬게 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〉국토해양뉴스〉보도자료〉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유 크게 확대

<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서비스 개시>

▸ 추진배경 : 아파트 선거비용을 절감하고, 입주민의 자율성 확대

▸ 주요내용
①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·감사의 간선 선출허용 (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 한함)
②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(다만,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함)

▸ 시행일 : 2013.1.(잠정,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)

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
(☎ 044-201-2639)

▣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, 사회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나이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.

- 농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는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·운영, 홈페이지 관리, 마을 홍보, 회계, 고객관리, 주민교육, 방문객 안내 등 체험관광 관련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여 그간 나이제한(65세 이하)을 두어 왔습니다.

- 그러나, 농어촌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"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운영요령"을 개정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"개인능력" 위주로 채용해나갈 계획입니다.

  * 개인능력 : 농어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개발 · 운영, 마을 홍보, 홈페이지 관리, 회계 및 고객관리, 주민교육 등 능력을 갖춘자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고시〉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영 요령

<2013년도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내용>

▸ 추진배경 : 정부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부응, 농촌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폭 확대

▸ 주요내용

①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(지원) 시 연령 규제 개선

- (기존) 농촌 :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, 어촌 :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

→ (개선) 체험마을을 관리·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 (연령상한 없음)

▸ 시행일 : 2013.1.1.

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

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
(☎ 044-201-1737)

▣ 고령층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, 농지규모화사업 및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최근 평균수명 증가·농업기계화 등으로 농업경영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만 60세로 되어 있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지원대상 연령기준을 2013년부터 만 64세까지로 완화합니다.

  -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경영인에게 농지 매매, 장기임대차, 농지 교환분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또한, 자연재해·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인(농업법인)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을 기존 만 70세 이하에서 만 75세 까지 확대하여 부채 농가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>영농규모화사업, 경지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

<2013년도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>

▸ 추진배경 : 고령층의 농업경영 연령확대에 따른 농지은행 사업 지원 확대

▸ 주요내용
①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(만60세→만64세)
②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(만70세 → 만75세)

▸ 시행일 : 2013.1.1.

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('13~'16년)으로 전환하고, 축산업 등록 대상 축종을 확대

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(☎ 044-201-2317)

▣ 일정규모 이상 가축(소, 돼지, 닭, 오리)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 할 계획입니다.

-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, 부화업, 정액등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,

  - 가축사육업은 축종별(소, 돼지, 닭, 오리 등)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~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 할 계획입니다.

〈축종별 축산업 허가제 도입계획〉

(단위: ㎡)

규모		기업	전업	준전업	소규모
시기		'13년	'14년	'15년	'16년
축종	소	1,200 초과	600초과~1,200	300초과~600	50초과~300
	돼지	2,000 초과	1,000초과~2,000	500초과~1,000	50초과~500
	닭	2,500 초과	1,400초과~2,500	950초과~1,400	50초과~950
	오리	2,500 초과	1,300초과~2,500	800초과~1,300	50초과~800

-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모든 소규모 농가에 확대 적용 할 계획입니다.

  * 등록기준 : (현행) 소 300㎡, 돼지 등 50㎡ 초과 사육시설 → (변경) 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

  * 등록축종 : (현행) 4종(소·돼지·닭·오리) → (변경) 11종 우제류·가금류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

<2013년도 축산업 허가제 도입>

▸ 추진배경 :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,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

▸ 주요내용

① 축산업 허가제를 축종별(소, 돼지, 닭, 오리)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~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(사육 규모에 따라 각각 1년씩 유예기간 설정)

②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사육규모 미만과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확대

▸ 시행일 : 2013.2.23.

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

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
(☎ 044-201-2342~3)

▣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'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'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.

-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50%임을 고려할 때,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시 약 12~15%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지원규모 및 조건(안) : 1,200억원(3%, 2년 상환)

※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(www.mifaff.go.kr)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

<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(신규)>

▸ 추진배경 : 축종별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료구매비용 절감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

▸ 주요내용

① 외상거래를 현금거래 등으로 전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

- 지원규모 및 조건(안) : 1,200억원(3%, 2년 상환)

▸ 시행일 : 2013.1.1.

※ (잠정)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

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

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
(☎ 044-201-2355)

▣ 동물 보호와 유기·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.

-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해당동물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.

  -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됩니다.

-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·유실 동물의 발생 감소, 유기·유실동물 발견 시 신속한 반환에 따른 동물보호,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, 한 단계 업그레이드

<2013년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>

▸ 추진배경 :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동물의 발생 억제,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

▸ 주요내용

① 2013년부터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

* 도서·오지·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·군은 제외

▸ 시행일 : 2013.1.1.

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

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
(☎ 044-201-2355)

▣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.

-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3월 산란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, 동물복지 수준·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돼지('13), 육계('14), 한·육우 및 젖소('15) 순으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는 지속가능한 선진화된 축산업을 영위하고, 소비자는 인증표시 확인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지〉알림소식〉보도자료〉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

<2013년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적용 축종 확대>

▸ 추진배경 :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순차적 확대

▸ 주요내용

① '13년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

* ('12) 산란계 → ('13) 돼지 → ('14) 육계 → ('15) 한육우·젖소

▸ 시행일 : 2013.5.(잠정)

※ (잠정) 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' 개정 추진 중으로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

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

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
(☎ 044-201-2656)

▣ 과거 지역단위로 운영되던 어선 표지판을 전국단위로 개선하고, 부착대상도 어장관리선까지 확대하여 어업인의 조업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.

- 그간 어선표지판에 시·도, 시·군·구별 지역약호를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어선 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어선이 타 지역으로 전출입시에도 기존 어선표지판을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
- 또한,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장관리선도 어선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어장구역을 이탈하여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의 효과적인 식별과 현장 임시검문의 최소화로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.

  * 전국단위의 어선표지판 부착 제도가 2008.1.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, 5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.1.1부터는 전면 시행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

<어선표지판 사용 개선>

▸ 추진배경 : 어선표지판을 기존의 지역 약호를 없앤 전국단위로 일원화함으로써 전출입시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어선표지판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사용토록 개선

▸ 주요내용
① 지역번호 사용을 폐지하고 어선등록번호만 표시
② 표지판 부착대상에 어장관리선을 포함
- 부착대상 : 연근해 어업허가, 어획물 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, 어장관리선

▸ 시행일 : 2013.1.1.

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
(☎ 044-201-2643)

▣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2012년까지는 시범사업 시행 첫 해로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 당 49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으나, 2013년부터는 시범사업을 30km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하여 직불금을 지원하게 됩니다.
-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 사업은 2014년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>공지사항>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

<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내역>

▸ 추진배경 : 도서 등 취약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 도모

▸ 주요내용
① 사업대상 범위 확대
- 육지로부터 50km이상 → 3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

▸ 시행일 : 2013.1.1.(잠정)
※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

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 개편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
(☎ 044-201-2622)

▣ 현행 '친환경수산물' 인증제도가 '유기수산물, 무항생제 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' 인증제도로 세분화 됩니다.

-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,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로 인증하게 됩니다.
  * 유기수산물 : 항생제·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·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
  * 무항생제수산물 :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
  *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: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(해조류)
- 인증절차는 희망하는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현장평가와 제품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 합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

<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>

▸ 추진배경 : 친환경어업 육성 및 생산자·소비자 보호를 위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 개편

▸ 주요내용
①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비 사용수산물 인증제도로 개편 시행
②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실시

▸ 시행일 : 2013.6.2.

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·어항법 개정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
(☎ 044-201-2632)

▣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 사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.

- 이를 통해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항을 레저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▣ 또한, 최근 어족자원의 고갈 등 어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낙후된 어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일환으로 어항구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.

- 「수산업법」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·교습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항구역 내에서의 어업활동을 허용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어촌·어항법

<어촌·어항법 개정 항목>

▸ 추진배경 :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·어항법 개정

▸ 주요내용
①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
②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·교습어업을 허용

▸ 시행일 : 2013.4.23.

수협중앙회의 정상 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
(☎ 044-201-2619)

▣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경영실사 후 순자본비율이 0%미만인 부실조합에 대해서만 적기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으나,

  - 앞으로는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에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.

▣ 시정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미리 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

<2013년도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>

▸ 추진배경 : 일선조합 부실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 책무 강화

▸ 주요내용
①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
② 시정 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 고시

▸ 시행일 : 2013.1.1.

서해5도 백령도 대·소청도 주변어장 확장

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(☎ 044-201-2657)

▣ 어민의 편익보장 및 소득증대를 위한 서해5도 주변어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.

- 이번 조치는 인천광역시 및 지역 어업인 건의요청과 국방부의 어장확장 수용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, 이를 위해 어선안전 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어장확장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인천시 및 옹진군에서 지도선을 배치할 계획이며, 어업인의 조업구역 및 조업시간 준수를 위하여 수협, 지자체에서 홍보·지도할 계획입니다.

▣ 다만, 연평도 일부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, 「어선안전조업규정」에 어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어선안전조업규정

<2013년도 서해5도 어장확장 내용>

▸ 추진배경 : 서해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로한계선 이북 연평도 및 백령·대청·소청도 주변어장 중 일부 확장

▸ 주요내용

① 연평도 주변어장 조업구역 37㎢확장(764㎢ → 776㎢)
② 소청도 'B어장' 조업구역 43㎢확장(133㎢ → 176㎢)
③ 백령도 'C어장' 조업구역 36㎢확장(102㎢ → 138㎢)

▸ 시행일 : 2013.1.1.

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

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
(☎ 044-201-1858)

▣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시 품목별 재배면적·수확면적,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·출하량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게됩니다.

- 품목별 재배면적은 기존 등록정보에 '3%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' 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 '10%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' 하도록 완화하게 됩니다.

- 또한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가 '20%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' 하도록 하였으나 '10%'로 조정하는 대신 '10%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(소 3마리 이내, 돼지 50, 닭 1,000, 오리 500)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' 됩니다.

- 아울러 가축종류별 출하량은 등록한 정보의 '3%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'을 하도록 하였으나 '20% 초과'로 완화하되, '20%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(소3마리, 돼지 50, 닭 1,000 등)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' 됩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·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

<201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항목>

▸ 추진배경 :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(품목별 재배면적 등) 변경범위 완화

▸ 주요내용
①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완화(3% 초과 → 10%로 완화)
②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(20% → 10%, 초과하더라도 일정 규모는 이내 미변경)
③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(3% → 20%,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초과는 변경등록)

▸ 시행일 : 2012.12.6.

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 · 일원화

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
(☎ 044-201-1872)

▣ 농산물, 가공식품,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·일원화 하고, 법 제명도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서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」으로 변경됩니다.

- 수산물은 유기, 무항생제, 활성처리제 비사용으로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 되고,
-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·재포장하면 과태료를 부과(최고 500만원)하도록 재포장인증을 의무화 하여 부정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을 차단 할 계획입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<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·일원화>

▸ 추진배경 :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·일원화하여 친환경 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

▸ 주요내용

①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 변경

② 인증대상 범위 확대(유기수산물, 무항생제수산물,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)

③ 재포장인증 의무화

▸ 시행일 : 2013.6.2.

비료 생산·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 기재 의무화

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(☎ 044-201-1882)

▣ 비료 생산·수입업자는 비료 제조원료에 대해 반드시 장부 기재 및 보존을 해야 합니다

- 그 동안 단속 기관에서 최종 제품(비료)을 검사하여도 어떤 원료를 사용하였는지를 밝혀낼 수 없어 불량 원료 사용에 따른 농업인 피해 및 환경 오염 우려가 있었습니다.
- 앞으로는 비료 원료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(3년간)이 의무화 되어 위반 비료 생산·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.
  - 이를 통해 불량비료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업인 보호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비료관리법 시행규칙

<비료 생산·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>

▸ 추진배경 : 불량비료 유통 사전 차단으로 농업인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

▸ 주요내용

① 비료 생산·수입업자의 비료 제조 원료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 의무화(3년간)

② 장부기재 및 보존 위반시 행정처분(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)

▸ 시행일 : 2013.4.23.

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

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
(☎ 044-201-1654)

▣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'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'이었으나, 2013년 6월부터 「식물신품종보호법」이 시행되어 '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'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  *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: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제도

-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 품종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강화

<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주요내용>

▸ 추진배경 :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

▸ 주요내용

①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
(기존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
▸ 시행일 : 2013.6.2.

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

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
(☎ 044-201-1717)

▣ 간척지 관리제도 및 농업여건 등의 변화 등에 따라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척지를 종전의 수도작 위주에서 원예·축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,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은 없었습니다.

- 「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(2013.1.18)으로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  - 아울러, 기반시설·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을 통해 간척지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

<「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주요 내용>

▸ 추진배경 :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

▸ 주요내용
① 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
② 간척지활용사업계획 수립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
③ 국가 및 지자체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,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

▸ 시행일 : 2013.1.18.

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

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
(☎ 044-201-1719)

▣ 한·미 FTA 발효 이후 「FTA 보완대책」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·공개할 계획입니다.

* 한·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.1조원 규모의 「한·미 FTA 보완대책」('08~'17)을 마련 추진

- 2013년부터는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,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·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

- 이를 토대로 대책을 내실있게 보완하고, 농어업인 수요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등 보완대책을 지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훈령·예규·고시〉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<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>

▸ 주요내용

①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·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

② 정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,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

▸ 시행일 : 2013.1.1.

벌채·제재·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

산림청 목재생산과
(☎ 042-481-8875)

▣ 벌채, 제재, 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목재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목재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.

- 그동안 벌채에서 제재 및 유통에 이르는 목재관련 산업은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 없이 운영되어 불량 목재제품이 생산·유통 되고,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.

  - 2013년 5월부터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·군·구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4조

- 또한, 영세한 소규모 목재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보완 사업과 임업정책자금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합니다.

<목재생산업 종류 및 분야>

▸ 추진배경 : 목재생산업 등록을 통하여 안전한 목재제품 공급 및 목재이용 확대

▸ 주요내용
① 입목·죽을 벌채·제재·유통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·군·구에 등록
② 원목생산, 수입되는 산물 및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도 포함

▸ 시행일 : 2013.5.24.

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지도사) 자격증 발급

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
(☎ 042-481-8869)

▣ 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.

- 지금까지 숲해설가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으나, 앞으로는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('12.7.26)에 따라 산림청장 명의의 국가자격증이 발급됩니다.

  -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(이론·실습 평가 70점 이상, 현장실습 30시간) 하여야 합니다.

- 아울러, 종전의 숲해설가·숲길안내인 교육과정 프로그램 인증제도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로 전환됩니다.

☞ (참고)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, 동법 시행규칙 제6조

<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양성기관 지정 >

▸ 추진배경 :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

▸ 주요내용
① 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지도사) 자격증 교부
② 숲해설가·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도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로 전환

▸ 시행일 : 2013년 상반기

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(3→2km)

산림청 산림병해충과 (☎ 042-481-4076)

▣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 범위를 축소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.

- 종전까지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을 3km로 정하여 해당지역 산림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.
- 앞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남겨 둠으로써 해당지역 산림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  -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 구역 : (종전) 3km → (변경) 2km

<2013년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>

▸ 추진배경 :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을 범위를 축소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관련 산업 활성화

▸ 주요내용

①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축소(3km → 2km)

▸ 시행일(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령 개정 시행)

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범위 축소(시행령 제3조의3)

* '12.12.6부터 시행

②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 축소 (시행규칙 제7조)

* '12.12.9부터 시행

부처별 달라지는 제도

○ 기획재정부 ····· 203
○ 교육과학기술부 ····· 203
○ 법무부 ····· 206
○ 국방부 ····· 207
○ 행정안전부 ····· 210
○ 문화체육관광부 ····· 211
○ 농림수산식품부 ····· 213
○ 지식경제부 ····· 219
○ 환경부 ····· 221
○ 보건복지부 ····· 223
○ 국토해양부 ····· 229
○ 여성가족부 ····· 243
○ 고용노동부 ····· 245
○ 방송통신위원회 ····· 249
○ 국가보훈처 ····· 251
○ 금융위원회 ····· 251
○ 관세청 ····· 252
○ 병무청 ····· 253
○ 방위사업청 ····· 255
○ 경찰청 ····· 258
○ 소방방재청 ····· 259
○ 산림청 ····· 260
○ 중소기업청 ····· 261
○ 특허청 ····· 262
○ 식품의약품안전청 ····· 262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기획재정부			
’12.12.28일 현재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중으로, 국회 확정후 ’13년 1월초 관련 내용 수록 예정			
교육과학기술부			
1.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화	○ 교육감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중앙정부 정원통제	○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정원책정·운영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	교육공무원법·지방공무원법 (’12.11월 본회의 통과)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(02-2100-6243)
2. 사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시행	○ 2년마다 표준정원 고시 (지방공무원) ○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규정 등	○ 지방공무원, 사립학교 행정직원, 학교회계 직원 등의 총액인건비 교부 - 인건비 내에서 자율적 정원 책정 ○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폐지 ○ 국단위 기구정수제 전환 ○ 지역교육청 센터 직제화 등	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(’13.1월)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(02-2100-6243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3. 5세 누리과정을 만 3-4세까지 확대	〈교육·보육과정〉 · 만 5세 : 유치원·어린이집 모두 5세 누리과정 · 만 3,4세 ㄱ 유치원 :유치원교육과정 ㄴ 어린이집 :표준보육과정 〈지원대상〉 · 만 5세 : 전계층 · 만3,4세 : 소득하위 70% 〈지원단가〉 · 국공립유치원 · 만 3~5세 월 5.9만원 (입학급, 수업료 면제) ·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· 만 5세 월 20만원 · 만 4세 월 17.7만원 · 만 3세 월 19.7만원	〈교육·보육과정〉 · 만 3,4,5세 : 유치원·어린이집 모두 3-5세 연령별 누리과정 · 만 3,4,5세 : 전계층 〈지원대상〉 국공립유치원 - 만 3~5세 월 6만원 (입학급, 수업료 면제) 〈지원단가〉 ·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- 만 3~5세 월 22만원	유아교육법, 유아교육법 시행령 ('13.3.1.)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(02-2100-6556)
4.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	○ 학교 방문(또는 온라인) 신청 ○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	○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(또는 온라인) 신청 ※ 온라인 신청 시, 부(父)·모(母)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○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☞ (참고)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	초·중등교육법 ('13.2.)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(02-2100-6521)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 추진단 (02-739-3744)
5.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	○ 지원범위 : 차상위 40% ○ 지원규모 : 1인당 36만원 (월3만원)	○ 지원범위 : 차상위 70% ○ 지원규모 : 1인당 48만원 (월4만원)	-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(02-2100-6415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6.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제도 개선	○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이상	○ 대학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- 전공과목의 경우,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이상 - 교직과목의 경우,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80이상	교원자격검정령 ('13.3.1.)
	○ 교원양성기관에서 임의로 실시 여부 결정	○ (양성 및 자격부여) 필수적으로 '인·적성검사' 실시 및 결과 반영	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 (02-2100-6482)
	○ 초등 : 3단계 전형 - (1차 객관식)교육학, 교육과정 - (2차 논술형)교직논술, 교육과정 - (3차)수업실연, 심층면접 등	○ 초등 : 2단계전형(2012년도부터) - (1차) 교직(논술), 교육과정(서답형) - (2차) 수업실연, 심층면접 등 ※ 유치원 및 초등특수 포함	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규칙('12.8월) ('13년중)
	○ 중등 : 3단계 전형 - (1차 객관식) 교육학, 전공 - (2차 논술형) 전공 - (3차) 수업실연, 심층면접 등	○ 중등 : 2단계전형(2013년도부터) - (1차) 교육학(논술), 전공(서답형) - (2차) 수업실연, 심층면접 등 ※ 비교과 및 중등특수 포함	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 (02-2100-6482)
	〈신 설〉	○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응시과목에 '한국사' 과목을 추가할 예정('13.9.1)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(유효기간 5년)으로 대체할 수 있음	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규칙('12.8월) ('13.9.1.)
			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 (02-2100-6482)

법무부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.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		○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※ 관련법 :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	○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 ※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☞ (참고)법무부인권국홈페이지>알림마당>인권관련뉴스>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!!법률조력인	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'13.6.19)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(02-2110-3648)
2.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		〈없 음〉	○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·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 ☞ (참고)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>알림마당>인권관련뉴스> '진술조력인 제도 도입!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전면적 확대!'	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'13.6.19)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(02-2110-3852)
3. 친권제도 개선	1 친권 제도의 개선	○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친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	○ 이혼당시 친권자가 되지 못한 부모일방이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필수적으로 관여 ○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민법 ('13.7.1.)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(02-2110-3164)
	2 보호의 공백방지를 위한 조치 및 후발적 사정변경 가능성의 개방 등	○ 해당 규정 없음	○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가정법원에서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○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민법 ('13.7.1.)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(02-2110-3164)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/ 관계 부서
4. 입양제도 개선	1 입양 허가제의 도입	○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 간의 합의와 입양신고만으로 일반입양 성립	○ 입양허가제의 도입: 미성년입양시 반드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민법 ('13.7.1.)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(02-2110-3164)
	2 부모 등의 동의면제 절차도입	○ 부모 등의 대락 내지 동의가 필수적임	○ 부모 동의 등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입양가능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민법 ('13.7.1.)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(02-2110-3164)
	3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	○ 15세미만	○ 친양자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으로 수정하여 나이 제한없이 모든 미성년자가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 됨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민법 ('13.7.1.)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(02-2110-3164)
국방부				
1. 군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		○ 14개 기관 운영 ※ 국군인쇄창, 국군수도병원, 국군대전병원, 국군의학연구소, 육군2보급단, 육군3보급단, 육군항공기정비단, 육군특수무기정비단, 해군보급창, 해군1함대정비대대, 해군2함대정비대대, 공군40보급창, 공군82정비창, 공군83정비창	○ 육군종합정비창, 해군3함대정비대대, 공군종합보급창 3개 추가 지정 ☞ 국방부 홈페이지>국방미디어>보도자료> '13년 軍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	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 ('11.8.20.) ('13.1.1. 적용) 국방부 경영분석담당관 (02-748-5380)
2. 평시 예비역 장교·부사관의 현역 재임용		〈없 음〉	○ 결원 발생시 전역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·부사관 단기 복무로 재임용	군인사법 ('13.6.1.)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(02-748-5121)
3.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		〈없 음〉	○ 한시 계약군무원 임용근거 마련 -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한시 계약군무원을 임용	군무원인사법 ('13.2, 잠정)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(02-748-5107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4.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	○ 병복무기간 -이등병: 5개월 -일등병: 6개월 -상등병: 7개월 -병 장: 3개월 (해군 5개월, 공군 6개월)	○ 복무기간 조정 -이등병 : 3개월(-2) -일등병 : 7개월(+1) -상등병 : 7개월 -병 장 : 4개월(+1) (해군 6개월, 공군 7개월)	군 인사법 시행규칙 ('13.1.1) 국방부 인력관리과 (02-748-5135)
5.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제도 마련	〈없 음〉	○ 3자녀이상 여군의 당직근무 면제 - 셋째자녀 임신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해당	부대관리훈령 개정 ('13.1.)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(02-748-5173)
	○ 임신, 출산, 유산 등으로 체력검정의 일시보류 시 군의관소견서와 소속지휘관 확인서 모두 제출	○ 군의관소견서(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소견서), 출생증명서, 소속 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	부대관리훈령 개정 ('13.1.)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(02-748-5173)
6.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	○ 기본훈련 시 통지방법 : 우편엽서	○ 기본훈련 시 통지방법 : 창봉투 형 우편으로 변경, 개인정보보호 강화	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('13.1.1) 국방부 예비전력과 (02-748-5245)
7.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	○ 부대별 여건고려, 연대별 1~2회	○ 부대여건 고려, 도시지역 확대 시행	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('13.1.1) 국방부 예비전력과 (02-748-5245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8. 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	○ 대대급 예비군훈련장 활용	○ 연대급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 운영 - 13년 후반기~15년까지 1개소 시험 적용 * 서울특별시 3개구(광진, 성동, 동대문) 예비군 대상 / 56사단 금곡 예비군 훈련대	- '13.후반기 국방부 예비전력과 (02-748-5241)
9. 병 봉급 인상	○ 병봉급 이등병 81,500원 일등병 88,000원 상등병 97,500원 병 장 108,000원	○ 병봉급 인상(15%) 이등병 93,700원(증 12,200원) 일등병 101,200원(증 13,200원) 상등병 112,100원(증 14,200원) 병 장 124,200원(증 16,200원)	공무원보수규정 ('13.1.1.) 국방부 복지정책과 (02-748-6613)
10.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	○ 특수지근무수당 -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* 갑지역 : 15,000원 * 을지역 : 12,000원	-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, * 갑지역 : 16,500원 * 을지역 : 13,200원	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('13.1.1.) 국방부 복지정책과 (02-748-6613)
	○함정수당(수상함) - 병 : 29,700원	- 병 : 32,700원	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('13.1.1.) 국방부 복지정책과 (02-748-6613)
	○ 계호업무수당 대상자 -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	-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 교정시설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	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('13.1.1.) 국방부 복지정책과 (02-748-6613)
11.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	○ 일부 부대 상병진급자에게 시범 운영	○ 모든 부대 상등병 진급자에게 확대 시행	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2.9.22.) ('13.1.1. 적용) 국방부 보건정책과 (02-748-6655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/ 관계 부서
12.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	○ 고양, 홍천 국군병원 시범 운행	○ 전방 6개 군단지원병원(고양, 홍천, 양주, 일동, 춘천, 강릉병원) 및 김포지역 해병 2사단 추가 확대	('13.7.1.) 국방부 보건정책과 (02-748-6648)
13. A형간염 백신 접종 확대	○ 군 의무인력, 식품 취급 종사자 등 특수직 근무자에 한하여 접종	○ 13년 육군 1군사령부 예하 신교대 훈련병 및 경기도 일부 신교대 훈련병 접종 시작 ○ 14년 전체 육군 입소장병, 15년부터 해군 및 공군 포함 전체 입소 장병으로 확대	군 전염병 예방업무 훈령 ('13.4.1.) 국방부 보건정책과 (02-748-6649)
14.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	○ 군 작전차량의 유료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군 작전차량증 제시의무	○ 제시절차 폐지 - 대상 : 외관상 군 차량으로 식별 가능한 모든 군 작전차량	유료도로법 시행규칙 ('12.9.14.) ('12.10.1. 적용) 군수관리관실 국제군수협력과 (02-748-5757)

행정안전부

1. 지방세 가산세 제도개선	1 납세 의무자	신고불성실	10% 또는 20%	과소신고	일반과소신고	10%	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('13.1.)
					부정과소신고	40%	
				무신고	일반 무신고	20%	
					부정 무신고	40%	
		납부불성실	1일 0.03%	현행과 같음			
		취득세	-	장부 기록·비치의무 위반 가산세(신설)		10%	
		취득세 미등기전매	80%	현행과 같음			
		레저세 의무위반	10%				
		담배소비세 의무위반 Ⅰ (가장의무 불이행 등)	10%			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(02-2100-3916)
		담배소비세 의무위반 Ⅱ (면제담배 타용도 사용 등)	30%				
		지방교육 신고불성실	10%	폐지			
		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	1일 0.03%	현행과 같음			
	2 특별 징수 의무자	신고납부 또는 납부 불성실	10%	납부불성실(기본)		5%	
				납부불성실(추가)		1일 0.03%	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2.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	1 슈퍼마켓협동조합 감면 확대	○ 슈퍼마켓협동조합 취득세 감면율 - 상점가내 : 75% - 상점가 이외 : 50%	○ 슈퍼마켓협동조합 취득세 감면율 - 지역에 관계없이 75%	지방세특례제한법 ('13.1월)
	2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 신설		○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모든 알뜰주유소에 대해 2년간 재산세 50% 감면	
	3 다자녀 가구 지원 감면연장	○ 2012년말까지 취득세 면제 -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	○ 2015년말까지 취득세 면제 -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(02-2100-3926)
	4 임대주택 감면 연장	○ 2012년말까지 취득세, 재산세 감면 - (취득세) 60㎡.이하 면제 - (재산세) 40㎡이하 면제 40~60㎡ 50% 60~85㎡ 25%	○ 2015년말까지 취득세, 재산세 감면 - (취득세) 60㎡.이하 면제 - (재산세) 40㎡이하 면제 40~60㎡ 50% 60~85㎡ 25%	
문화체육관광부				
1.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		〈없 음〉	○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 개발·보급 및 표준양식 사용시 재정지원 우대 ○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○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○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11월 18일, '예술인 복지법' 시행, 법을 통한 복지 지원 첫 출발	예술인 복지법 ('12.11.8.) ('13.1월 적용)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과 (02-3704-9523)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2.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		〈없 음〉	○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,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(법 제27조의2) -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,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·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 부여(시행령 제16조의2) ○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「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」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제출(시행규칙 제2조)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홈페이지	○ 문화예술교육지원법(제27조의2 규정 시행/'13.2.18) ○ 같은법 시행령(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규정 시행 /'13.2.18) ○ 같은법 시행규칙 (제2조 규정 시행/'13.2.18)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(02-3704-9406)
3.유상포인트, 전자대금 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	1 유상 포인트에 대한 정보제공	〈없 음〉	○ 사업자가 유상포인트를 발행한 경우, 자본금의 규모 및 자기자본현황,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,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 사항, 포인트 사용상 제한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	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('13.2월(잠정))
	2 전자적 대금 지급시 사전확인 및 사후통지	〈없 음〉	○ 콘텐츠 거래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의 경우, 이용자의 사전확인 및 결제 후 이용자에 대한 통지 -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의 내용 및 종류, 콘텐츠의 가격, 콘텐츠의 제공기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동의 확인 - 전자적 대금지급 후 사업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사업자별로 거래내역, 이용요금, 연락처 표시	디지털콘텐츠 산업과 (02-3704-9311)
	3 청약철회 등의 방식에 있어 전자적 방법 제공	〈없 음〉	○ 콘텐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청약철회, 계약의 해지·해제·변경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	
	4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지연시 지연이자율 조정	○ 24%	○ 20%	

농림수산식품부			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.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	○ 가구 단위 주택개량 및 신규마을 조성 별도지원 - 전원마을·뉴타운 조성사업	○ 마을단위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○ 기존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 통합지원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농어촌정비법	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('13.1.)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(044-201-1553)
2.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·운영	〈없 음〉	○ 국·공립 대학병원, 의과대학 및 연구소 등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지정·운영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	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('13.1월)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(044-201-1574)
3.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	〈없 음〉	○ 농림수산식품부와 (사)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농어촌사회 공헌활동으로 농어촌 활력 창출에 기여한 기업, 단체 등을 인증 ○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우대, 정책사업 지원 우대 등 각종 제도적인 지원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농어촌을 사랑하세요. 기업이 성장합니다.	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요령 ('13.1.)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(044-201-1590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4.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	○ 김치류 원산지 표시 : 98% 이상인 원료가 없을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 ○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〈12개품목〉 소·돼지·닭고기(배달용 포함), 오리고기, 쌀, 배추김치, 광어, 우럭, 낙지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 ○ 원산지 표시방법 - 글자크기 : 음식명 1/2 - 표시위치 : 규정 없음 - 배추김치 : 배추김치만 표시 - 혼합표시 : 규정 없음	○ 김치류 원산지 표시 확대 :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○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 및 표시 추가 〈좌 12개품목 + 추가 4품목〉 돼지고기(배달용 포함), 염소고기, 고등어, 명태, 갈치,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, 살아있는 수산물 ○ 원산지 표시방법 변경 - 글자크기 :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- 표시위치 : 음식명 옆 또는 하단 - 배추김치 :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- 혼합표시 :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	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('13.6.잠정)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(044-201-2419)
5.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	○ 미국 수출 제한	○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 가능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	가축전염병 예방법/축산물위생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(044-201-2457)
6.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확대	○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우대 주관기관 : 농림수산식품부장관	○ 지원우대 주관기관 :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추가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	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('13.1.)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(044-201-1535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7.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	○ 농촌 :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○ 어촌 :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	○ 농어촌 체험마을을 관리·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(연령 상한 없음)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고시>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영 요령	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운영요령 ('13.1.)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시행지침 ('13.1.)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(044-201-1588) 수산개발과 (044-201-2639)
8.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	○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: 만 60세 ○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확대 : 만 70세	○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: 만 64세까지 확대 ○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확대 : 만 75세까지 확대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>영농규모화사업, 경지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	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('13.1.)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(044-201-1737)
9. 축산업 허가제 시행 및 가축사육업 등록제 대상 확대	○ 허가제 없음 ○ 종축업, 부화업, 정액등처리업과 사육면적이 소 300㎡, 닭·오리·돼지 50㎡를 초과하는 농가	○ 종축업, 부화업,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의 가축사육업(소, 돼지, 닭, 오리)은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함 ○ 허가대상 미만의 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업과 사슴, 양 사육업 그리고 축사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인 닭·오리·거위·칠면조·메추리·타조·꿩 사육업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고시>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	축산법 시행령 ('13.2.)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(044-201-2317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0.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	〈없 음〉	○ 외상거래를 현금거래 등으로 전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 자금 지원(3%, 2년 상환) ☞ (참고)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	사료관리법 ('13.1.)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(044-201-2342)
11.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시행	○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	○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함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, 한 단계 업그레이드	동물보호법 ('13.1.1.)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(044-201-2355)
12.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, 돼지에 확대	○ 기존 산란계만 적용	○ 돼지에 확대 시행 ☞(참고) 농림수산식품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	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기준 및 인증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('13.5.)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(044-201-2355)
13. 어선표지판을 전국단위로 개선하고, 부착대상을 확대	○ 사도, 사군구 지역 약호와 함께 어선등록번호 표시 ○ 표지판 부착대상을 연근해 어업허가어선, 어획물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에 한정	○ 지역약호를 폐지하고 어선등록번호만 표시 ○ 표지판 부착대상에 어장관리선도 포함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	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('13.1.1. 적용)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(044-201-2656)
14.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	○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에 가구 당 49만원 지원	○ 대상지역을 3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으로 확대(가구당 49만원 지원)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>공지사항>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	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('13.1.1. 적용)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(044-201-2643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5.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	○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	○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로 개편 시행 ○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를 실시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예규고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	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('13.6.)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(044-201-2622)
16. 어촌어항법 개정	○ 어항시설기본·어항정비·어항환경개선계획 ○ 어항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	○ 어항개발계획에 레저관광개발계획 추가 ○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시험·연구·교습어업에 한해 허용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어촌·어항법	어촌어항법 시행령 ('13.4.)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(044-201-2632)
17. 수협중앙회의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	〈없 음〉	○ 일선조합 부실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의 책무 강화 및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요구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	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('13.1.)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(044-201-2619)
18. 서해5도 백령, 대소청도 주변어장 확장	○ 연평도 주변어장 총764㎢ ○ B 어장 총 133㎢ ○ C 어장 총 102㎢	○ 연평도 주변어장 총776㎢ ○ B 어장 총 176㎢ ○ C 어장 총 138㎢ ○ 연평도 일부역은 어구를 설치할 수 없음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예규고시>어선안전조업규정	어선안전조업 규정 고시 ('13. 1.)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(044-201-2657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9.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	○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: 3% 초과 ○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 : 20% 초과 ○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 : 3% 초과	○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:10%로 완화 ○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 :10%(초과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내 미변경) ○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 :20%(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초과 변경등록)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·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	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, 고시 ('12.12.)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(044-201-1858)
20.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·일원화	○ 친환경 농산물과 수산물, 유기가공식품 등 인증제로 다원화 - 친환경농업육성법 - 농수산물품질관리법 - 식품산업진흥법	○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으로 제명 변경 ○ 유기수산물, 무항생제수산물, 활성처리 제비사용수산물로 인증대상 범위 확대 ○ 재포장인증 의무화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	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('13.6.2)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(044-201-1872)
21. 비료 생산·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 기재 의무화	〈없 음〉	○ 비료 생산·수입업자의 비료 제조원료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 의무화 ○ 장부기재 및 보존 위반시 행정처분(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)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비료관리법 시행규칙	비료관리법 시행규칙 ('13.4.)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(044-201-1882)
22.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	○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시 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	○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시 -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식물신품종 육성자권리강화	식물신품종 보호법 ('13.6.2.)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(044-201-1654)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/ 관계 부서
23.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		〈없 음〉	○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○ 간척지활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○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등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	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'13.1.)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(044-201-1717)
24. FTA 지원대책 성과 및 투융자계획 국회 제출		〈없 음〉	○ FTA 농어업인 지원대책의 성과분석 및 투융자계획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 * 성과분석(5월말), 투융자계획(9월말)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	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('13.1월)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(044-201-1719)
지식경제부				
1.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단지 제도 개선	1 지식서비스 산업의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입주 확대	○ 자연과학 연구개발업, 출판업 등을 비롯한 11개 업종에 대해서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	○ 공학 연구개발업, 경영컨설팅업 등의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추가 허용	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2.12.)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(02-2110-5302)
	2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 내 업종의 통합배치 허용	○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을 수립	○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개 이상의 업종이 동일한 입주구역에 배치되도록 산업단지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 ☞ 법제처>법령통합검색('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' 입력)>시행예정법령 보기	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3.3.)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(02-2110-5302)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/ 관계 부서
2.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 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	1 생산공정이용시설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관리 제도화	○ 유전자변형미생물도 식품사료, 환경방출 등 다른 LMO와 유사한 위해성심사 절차를 거쳐 생산승인을 받음	○ 유전자변형미생물이 환경방출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생산공정 이용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함 ○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용도, 환경방출 가능성 등에 적합한 위해성심사를 거쳐 이용승인을 받아야만 이용 가능	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('13.12.)
	2 위해성심사 신청 주체	○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자, 생산자 이외에개발자도 위해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	○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는 자도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○ 개발자의 신청에 의해 위해성심사를 통과한 경우, 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때는 위해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	
	3 연구시설 폐쇄신고	○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음	○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를 하여야 함	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(02-2110-5661)
	4 환경영향조사	○ 포괄적 검사조항(현행 제36조)에 근거하여 연구·생산시설, 보관장소,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	○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·생산시설, 보관장소,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음 ○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☞ (참고)국가법령정보센터 >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	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/ 관계 부서
3.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	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	○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0%를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	○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을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%로 상향조정 ☞ (참고)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>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[대통령령 제24201호, 2012.11.27, 일부개정]	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('12.11.27.)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(02-2110-5495)
4.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	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 보고 의무화	○ 보고의무 없었음	○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조치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. ☞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> 제품안전기본법 [시행2012.8.24], [법률 제11437호, 2012.5.23. 일부개정]	제품안전기본법 ('12.8.24.) 지식경제부 안전품질정책과 (02-509-7238)
5. 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	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	○ 우정사업 관련 상품의 개발·판매 등의 다수 업무 위탁	○ 공익사업운영, 우체국보험 계약관리,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, 결산·회계 등 다수의 업무 추가 위탁	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('12.11.6.)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 (02-2195-1115)
환경부				
1.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		○ 건강보호항목 17종 ○ 생활환경기준 중 유기물질 항목 BOD, COD	○ 건강보호항목 20종 ○ 생활환경기준 중 유기물질 항목 BOD, TOC(Total Organic Carbon)	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('13.1.)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(02-2110-6822)
2.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		〈없 음〉	○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☞ (참고)환경부 홈페이지>알림홍보>보도해명자료>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정·공포	환경보건법 ('13.9.)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(02-2110-6960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3. 수시점검 방법 추가	○ 측정장비 노상단속, 비디오단속	○ 측정장비 노상단속, 비디오단속, 원격측정기 단속 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('13.2.) 환경부 교통환경과 (02-2110-6859)
4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	○ 정밀검사 결과 2회이상 부적합차량을 정비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확인검사를 담당하는 확인검사대행자로 이원화 되어 있음	○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전문정비사업 제도 시행 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('13.2.) 환경부 교통환경과 (02-2110-6859)
5.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	○ 규제 없음	○ 트랙터, 콤바인 2종에 대하여 Tier-3 기준 적용 및 환경인증 의무화 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홍보>보도자료> 농업기계 배출가스, 2013년 2월부터 단계적 규제 시행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('13.2.) 환경부 교통환경과 (02-2110-6809)
6. 미세먼지 예보 1 예보수행 주체 및 근거	○ 지자체 / 조례	○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/ 대기환경보전법	대기환경보전법 ('13. 2월)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(02-2110-6778)
2 예보 대상 대기오염물질	○ 미세먼지(PM10) 및 오존	○ 미세먼지(PM10) ☞ (참고)시범사업 이후 초미세먼지(PM2.5)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	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(개정 추진예정, '13.2.~)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(02-2110-6778)
3 예보 기준	○ 통합대기환경지수(환경부, '06년 개발)	○ 통합대기환경지수 개정(등급 구간 수정 등)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(개정 추진예정, '13.2.~)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(032-560-7344)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7.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		○ 음폐수 해양배출 처리	○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	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('13.1.)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(02-2110-6943)
보건복지부				
1.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	1 간암 치료제 (넥사바) 본인부담 경감	○ 본인부담 50%	○ 본인부담 5%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('13.1.)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(02-2023-7426)
	2 위암 치료제 (TS-1) 본인부담 경감	○ 본인부담 100%	○ 본인부담 5%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고시 ('13.1.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2-2023-7426)
	3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	○ 비급여	○ 건강보험 급여적용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고시 ('13.10.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2-2023-8756)
	4 노인틀니	○ 완전틀니 급여	○ 부분틀니까지 급여확대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고시 ('13.10.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2-2023-7413)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2. 필수 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	1 영유아 Hib 백신 필수예방 접종 도입	○ 전액 본인부담	○ 필수예방접종도입으로 보건소 및 민간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- 보건소 : 무료 - 위탁의료기관 : 본인부담 1회당 5천원 ☞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	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('13.3월)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(043-719-7369)
	2 65세 이상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	○ 전액 본인부담	○ 보건소 : 무료 접종 ☞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	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('13.5월)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(043-719-7369)
3. 의료급여 희귀난치 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 유지비 추가 지원	1 희귀 난치성질환 추가	○ 107개	○ 144개로 확대 적용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	의료급여수가의 준 및 일반기준 [별표2] ('13년 중)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(02-2023-8257)
	2 건강 생활 유지비 추가지원	○ 72천원/년 (매달 6천원 지급)	○ 추가 5만원/년 지급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	의료급여법 시행규칙 ('13년 중)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(02-2023-8257)
4. PC방 흡연 전면금지		○ 영업장 내부 1/2 이상 금연구역으로 지정	○ PC방 영업장 전체 흡연 금지	국민건강증진법 ('13.6.)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(02-2023-7848)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종 전</th><th>달라지는 내용</th><th>관련 법규
(제도 시행일)
관계 부서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5.음식점 외부가격 표시 등 표지제도 개선</td><td>1음식점 최종 지불가격 표시 및 식육 100g당 가격 표시</td><td>○ 가격표 게시 의무만 부과
○ 식육 중량당 가격 표시</td><td>○ 최종 지불 가격 표시
○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</td><td>식품위생법
('13.1.1)</td></tr>
<tr><td>2 음식점 외부가격 표시</td><td>○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 게시</td><td>○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·휴게 음식점은 외부에 반드시 가격 표시</td><td>보건복지부
식품정책과
(02-2023-7785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6.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</td><td>1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</td><td>○ ' 12년 선정기준액
- 단독가구 : 55.1만원
- 부부가구 : 88.1만원</td><td>○ ' 13년 선정기준액
- 단독가구 : 58만원
- 부부가구 : 92.8만원</td><td>장애인연금수급권 선정기준액 고시
('13.1.1)
장애인연금법시행령
('13.1.1)</td></tr>
<tr><td>2 부가급여 2만원 인상</td><td>○ 기초생활수급자
-(18~64세) 6만원
-(65세 이상) 15만원
○ 차상위: 5만원
○ 차상위 초과
-(18~64세) 0만원
-(65세 이상) 2만원</td><td>○ 기초생활수급자
-(18~64세) 8만원
-(65세 이상) 17만원
○ 차상위: 7만원
○ 차상위 초과
-(18~64세) 2만원
-(65세 이상) 4만원</td><td>보건복지부
장애인자립기반과
(02-2023-8672)
(02-2023-8654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7.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</td><td>1 신청자격 확대
○ 1급 장애인</td><td>○ 2급 장애인까지 확대
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</td><td>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
('13.1월)</td></tr>
<tr><td>2 활동지원급여 확대
【성인(18세이상 수급자)】
<table>
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
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60,000원</td></tr>
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690,000원</td></tr>
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
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
</table>
【아동(만6세~18세이만수급자)】
<table>
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
<tr><td>1등급</td><td>320점~445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
<tr><td>2등급</td><td>220점~31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
</table>
【성인(18세이상 수급자)】
<table>
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
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86,000원</td></tr>
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711,000원</td></tr>
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36,000원</td></tr>
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61,000원</td></tr>
</table>
</td><td>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
('13.1월)
보건복지부
장애인서비스팀
(02-2023-8204)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종 전</th><th>달라지는 내용</th><th>관련 법규
(제도 시행일)
관계 부서</th></tr>
<tr><td>7.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</td><td>○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,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추가 급여</th><th>구분</th><th>추가 급여</th></tr>
<tr><td>최중증 1인가구</td><td>664,000원</td><td>출산 가구</td><td>664,000원</td></tr>
<tr><td>중증 1인가구</td><td>166,000원</td><td>학교 생활</td><td>83,000원</td></tr>
<tr><td>중증 장애인 가구</td><td>83,000원</td><td>직장 생활</td><td>83,000원</td></tr>
<tr><td>취약 가구</td><td>83,000원</td><td>자립 준비</td><td>166,000원</td></tr>
</table></td><td>○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,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
<table>
<tr><th>분 류</th><th>추가급여</th></tr>
<tr><td>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</td><td>684,000원</td></tr>
<tr><td>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</td><td>171,000원</td></tr>
<tr><td>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~2급장애인,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</td><td>684,000원</td></tr>
<tr><td>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~2급 장애인, 6세 이하,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</td><td>171,000원</td></tr>
<tr><td>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</td><td>684,000원</td></tr>
<tr><td>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</td><td>171,000원</td></tr>
<tr><td>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</td><td>86,000원</td></tr>
<tr><td>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</td><td>86,000원</td></tr>
<tr><td>⑨ 가족(실질적 보호자)의 결혼, 출산,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</td><td>171,000원</td></tr>
</table></td><td rowspan="3">보건복지부
장애인서비스팀
(02-2023-8664)</td></tr>
<tr><td>○ 활동보조 급여 단가
<table>
<tr><th>분 류</th><th>금액 (원)</th></tr>
<tr><td>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</td><td>8,300</td></tr>
<tr><td>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9,300</td></tr>
<tr><td>③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9,300</td></tr>
</table></td><td>○ 활동보조 급여 단가
<table>
<tr><th>분 류</th><th>금액 (원)</th></tr>
<tr><td>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</td><td>8,550</td></tr>
<tr><td>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10,260</td></tr>
<tr><td>③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10,260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○ 원거리 교통비
- 교통비 : 1일 4,000원
- 대상지역 : 도서·벽지지역</td><td>○ 원거리 교통비
- 교통비: 1일 6,000원
- 대상지역: 시·군의 읍·면 전지역</td></tr>
</table>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8.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	-	○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※ 등록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	장애인복지법 ('13.1.27.)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(02-2023-8184)
9.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 확대	○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(31천명) - '12년 예산 : 48,111백만원	○ 150% 이하(40천명)로 확대 - '13년 예산 : 57,811백만원	-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(02-2023-8667)
10.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	-	○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·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- (신규대상기관) 사립유치원, 평생교육시설,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, 직업교육훈련기관, 국·공립 어린이집,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○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·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- (신규대상기관)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 ○ 정보통신·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- (신규대상기관) 체육시설,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	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('13.4.11.)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(02-2023-8640)
11.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	○ 1회~3회 : 180만원 범위내 (기초수급자는 300만원) ○ 4회 : 100만원 범위내	○ 1회~4회 : 180만원 범위내 (기초수급자는 300만원)	모자보건법 ('13.1월)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(02-2023-8483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2. 만 3~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	○ 만 5세 어린이에 한정 누리과정 적용	○ '13년 3월부터 만 3~5세 모든 어린이에게 누리과정 확대 적용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정책소개>영유아보육>3-5세 연령별 누리과정	영유아보육법 ('13.3월)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(02-2023-8926)
13.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완화	○ 최저생계비 1,495,550원 (4인가구 기준)	○ 최저생계비 3.4%인상 1,546,399원(4인가구 기준)	국민기초생활 보장법 ('13.1월)
	○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4.17%	○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.04%	
	○ 기본공재 재산액 대도시 133백만원 중소도시 108.5백만원 농어촌 101.5백만원	○ 기본공재 재산액 대도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어촌 116백만원	
	○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 ※ 100인 미만, 100인 이상~300인 미만, 300인 이상	○ 30인 미만 소규모시설 기준 신설 및 9.5%인상(전체시설 평균 5.3%인상)	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(02-2023-8128)
	○ 정부사업(희망키움통장 , 취업성공패키지사업 , 희망리본사업) 참여자 중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자 대상 지원	○ 전체 수급자 중 일반시장에 취업하여 소득증가로 탈수급한 대상자 전체로 확대	
	○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 30%공제	○ 자활사업 참여자 외에도 일반 시장에 취업한 수급자의 근로 소득 30% 공제	
	○ 수급자 사망시 1인당 50만원 지원	○ 1인당 75만원 지원	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국토해양부				
1. 감정 평가기준 명확화	1 감정 평가의 원칙 및 절차 규정	○ 원칙·예외 불명확 및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등 절차규정 미비	○ 감정평가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 - 시장가치 기준평가, 현황평가, 개별평가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, 예외적 평가시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토록 규정 ○ 감정평가업자와 의뢰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과 평가조건 부가관련 규정 신설 ○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	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('13.1.1.)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(044-201-3424)
	2 목적별·물건별 구체적 평가방법 및 윤리 규정	○ 미 규정	○ 목적별(담보, 경매, 도시정비 등) 및 물건별 감정평가(부동산, 권리, 동산 등) 방법과 절차 구체화, 감정평가업자의 윤리 규정 명문화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	감정평가 실무기준 ('13. 초) *규제심사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(044-201-3424)
	3 공공사업 보상평가 수수료 산정 시 종량제 방식 도입	○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종가제(100%)	○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 토지·건물에 한해 종량제(30%) 및 종가제(70%) 절충 도입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	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('13.1.1.)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(044-201-3424)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2.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		○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○ 2012년 3월부터 4개 시 범사업지역에서 서비스 (의왕시, 김해시, 남원시, 장흥군)	○ 토지(임야)대장, 지적도(임야도), 건축물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서, 주택가격, 공시지가,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확인 ○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급 및 열람 * 2013년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 전국 확대 실시 서비스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	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 ('13.8월 예정) 지적기획과 (044-201-3480)
3.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도입		○ 제도 없음	○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(PPLIS)을 도입하여, 사업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,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소관청에 구축하여 갈등 요인 해소 * PPLIS(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,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('13.9월)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 기획단 (044-201-4651)
4. 국민주택 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	1 국민주택 기금 대출 금리 인하	○ 근로자·서민전세자금 : 연 4.0% ○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: 연 4.2% ○ 근로자·서민주택구입자금 : 연 5.2%	○ 근로자·서민전세자금 : 연 3.7% ○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: 연 3.8% ○ 근로자·서민주택구입자금 : 연 4.3%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	국민주택기금 세부운영규정 ('12.12.21)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
	2 청약저축 금리 인하	○ 가입기간 1년 미만 : 연 2.5% ○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: 연 3.5% ○ 가입기간 2년 이상 : 연 4.5%	○ 가입기간 1년 미만 : 연 2.0% ○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:연 3.0% ○ 가입기간 2년 이상 : 연 4.0%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('12.12.21)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5.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	○ 근로자·서민전세자금 :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) ○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: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○ 근로자·서민주택구입자금 :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)	○ 근로자·서민전세자금 : 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4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) ○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: 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5천5백만원 이하 ○ 근로자·서민주택구입자금 : 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4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) 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	국민주택기금 세부운영규정 ('13.1. 시행예정)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
6. 소형·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	○ 무주택 인정 소형·저가주택 기준 - 전용면적 60㎡ 이하+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+ 10년 이상 보유	○ 무주택 인정 소형·저가 주택 기준 - 전용면적 60㎡ 이하 +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(2013.1월 시행예정)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
7.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	○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소명여부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하여 운영	○ 착오기재 소명이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'당첨취소, 청약통장 효력유지, 당첨사실 삭제, 일정기간 청약제한' 제재 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(2013.1월 시행예정)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
8.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	○ 외국인 주거안정을 위해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외국국적 보유자에 한해 우선공급	○ 외국인 주택단지의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확대 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(2013.1월 시행예정)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9.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 통합제공으로 국민편의 증대	〈신 설〉	○ 기금 관련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 제공 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	주택법 시행령 ('13.1월)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69)
10. 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	○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·감사의 직선제 선출 ○ 동별 대표자는 최대 2회, 4년간만 재임 가능	○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·감사의 간선제 선출허용(관리규약에 정할 경우) ○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(다만, 계속 재임은 2기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유 크게 확대	주택법 시행령 ('13.1월)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69)
11.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	○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물별 면적제한이 있어 자유로운 설치가 곤란하고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 등도 제한	○ 주민공동시설 면적 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역 및 단지특성에 맞게 총량범위 내에서 원하는 시설물을 자유로이 설치하도록 하고 용도변경도 가능하게 함 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	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('13.7월)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67)
12.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	○ 공동주택에는 획일적인 휴게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디자인을 제약	○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택개발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및 도시경과 개선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	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('13.7월)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67)
13.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	○ 2006.9.25이후(비수도권은 2009.7.1이후)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	○ 2014.12.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면제(단,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,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	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('12.12.18)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(044-201-3392, 3386)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4. 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배포		○ 전자도면(CAD) 및 종이 형식의 지도	○ PDF 방식의 지도 배포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등산로·자전거길 "나만의 맞춤지도" 만든다.	('13. 6월)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(031-210 -2720)
15.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 공정성 제고	1 기술제안서 평가 폐지, 기술자평가서 임의규정 전환 및 예시삭제	○ 용역비 30억원 이상 대상공종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 ○ 용역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대상공종의 경우 기술자평가서 평가 ○ 실적 및 경력 등 예시 제시	○ 폐지 ○ 용역비 20억원 이상의 공공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자 평가서 평가 ○ 예시 삭제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	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, 고시 ('13.1월, 4월)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81)
	2 PQ평가 기준 마련 시 심의절차 도입 및 책임감리원 역량평가 비중확대 (2점→4점)	○ 심의절차 별도규정 없음 ○ 책임감리원 면접배점 (2점)	○ 관계자 의견수렴, 위원회 심의 후 일반 공개 ○ 책임감리원 면접배점(용역규모에 따라 2~4점) - 20억원미만 2점, 20억원이상~30억원 미만 3점, 30억원이상 4점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	고시 ('13.4월)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01)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/ 관계 부서
16.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정립	1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가감액 대상에서 제외	○ 별도 규정없음	○ 법정공휴일은 대가감액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	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고시 ('13.1월)
	2 저가낙찰 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	○ 발주청에서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감리원 추가 배치	○ 70%미만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 - 낙찰율에 따라 총감리원 수의 20~50%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	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81)
17.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사용 기준 마련	1 안전 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	○ 별도 규정없음	○ 작성 및 검토비용 사용과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건설공사 안전 관리 지침 고시 ('13.1월)
	2 발파.굴착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	○ 별도 규정없음	○ 발파.굴착으로 인한 주변시설물의 사전 보강.보수.임시이전 등의 비용을 토목.건축등의 관련 분야 설계기준으로 산출 및 집행 가능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77)
	3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	○ 별도 규정없음	○ 공사로 인한 주변 도로의 우회에 따른 교통 안전시설물 등 비용 규정 마련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8.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	〈신 설〉	○ 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	행정도시건설특별법 ('13년) 기업복합도시과 (044-201-3689)
19.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 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	○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퍼센트 이상 차이나는 경우	○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5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	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('13.1.1.)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(044-201-3691)
20. 기업도시 개발 재투자율 하향 조정	○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최소 25퍼센트 이상	○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.5퍼센트P 하향조정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	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('13.1.1)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(044-201-3691)
21. 새만금개발청 설립	〈신 설〉	○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	새만금사업 지원 및 추진에 관한 특별법 ('13.9.11) 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팀 (044-201-3691)
22. 도시 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— 1 공원 조성계획에 범죄예방 계획 수립	〈신 설〉	○ 공원조성계획에 토지이용, 동선, 공원시설배치와 더불어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	도시공원법 시행규칙 ('13.1월)
22. 도시 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— 2 범죄예방 일반기준 제시	〈신 설〉	○ 도시공원의 조성·관리에 범죄예방 자연적 감시, 접근통제, 영역성 강화 등 범죄예방 일반원칙 제시	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(044-201-375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23.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	○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: 토지면적 2/3 소유, 토지소유자 1/2 동의	○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: ① 토지면적 2/3 소유, 토지소유자 1/2 동의, ② 공원조성비 4/5 예치	도시공원법 시행규칙 ('13.7월)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(044-201-3751)
24. 반품차량 판매시 반품차량 고지의무 신설	○ 고지의무 없음	○ 고지의무 신설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자동차관리법	자동차관리법 ('12.12.18.)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(044-201-3843)
25. 차량 판매·정비·폐차 내역 통지의무 신설	○ 전산정보처리조직 통지의무 없음	○ 전산정보처리조직 통지의무 신설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자동차관리법상	자동차관리법 ('13.9.)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(044-201-3844)
26.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 의무화	〈없 음〉	○ 2013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.5톤 이하 승합,화물,특수자동차에 의무장착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	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('13.1월)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044-201-3851)
27. 최고속도제한장치 적용대상 확대	○ 총중량 4.5톤 이상 승합자동차 ○ 총중량 3.5톤 이상 화물, 특수자동차	○ 총중량 4.5톤 이상 승합자동차 → 모든 승합자동차로 확대 ○ 총중량 3.5톤 이상 화물, 특수자동차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	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('13.8월)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044-201-385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28. 보행자보호를 위한 상해기준 강화	〈없 음〉	○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차는 보행자 상해기준을 의무적용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	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('13.1월)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044-201-3851)
29.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	○ 전액 본인 부담	○ 응시수수료 감면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 응시수수료 50% 감면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	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 지침 ('13.1.1)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(044-201-4602)
30.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에게 국유지 임대	○ 국유지 매입 또는 5년이내 단기 사용 허가 - 영구시설물 설치 불가	○ 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 -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	항만법 ('13.6월)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(044-201-4177)
31. 항만 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— 1 인·허가 의제시점	○ 항만공사 시행 또는 허가사실을 고시한 경우	○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한 경우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	항만법 ('13.6월)
2 관계기관 협의	○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법령에 따른 인·허가 사항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- 20일 이내 의견 제시	○ 관계행정기관이 협의요청에 대하여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	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(044-201-4145)
3 일괄 협의회 제도	-	○ 인·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 관계행정기관 일괄협의회 제도 신설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	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/ 관계 부서
32. 국제 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	1 변경등록 신고의무를 위반	○ 1천만원 이하 벌금	○ 200만원 이하 과태료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물류정책기본법 ('12.12월)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(044-201-4003)
	2 변경등록 신고기간	○ 30일	○ 60일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	3 양도·양수, 상속, 법인 합병, 휴업 신고기간	○ 15일	○ 30일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	4 휴업제한 기간	○ 6개월	○ 1년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	5 폐업신고	○ 15일 이내에 신고	○ 폐지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33.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	-	○ 복합물류터미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직권말소제도 도입 ○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및 물류단지 계획승인 처리기간 명시 및 자동 인·허가제도 도입 ○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 ○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에서 수분양자 제외 및 부과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 등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'13.6월)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044-201-4007)
34.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	-	○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(네거티브) 방식으로 전환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'13.7월)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044-201-4007)
35.과징금 · 벌칙 병과 제도개선	-	○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과징금·벌금 병과 규정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에 대해 벌칙(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을 삭제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'13.7월)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044-201-4007)
36.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	-	○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 ○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('13.1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('13.1월)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044-201-4011)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종 전</th><th>달라지는 내용</th><th>관련 법규
(제도 시행일)
관계 부서</th></tr>
<tr><td>37.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실제고제</td><td>〈없 음〉</td><td>○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
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</td><td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('13.1월)

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(044-201-4018)</td></tr>
<tr><td>38.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일부 변경</td><td>○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 이상,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일 것. 다만,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제곱미터 이상(영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39제곱미터 이상)의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.
○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(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만 해당한다)</td><td>○ 영업에 필요한 면적. 다만,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.

※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필요
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</td><td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('13.1.1.)

국토부 물류산업과 (044-201-4022)</td></tr>
<tr><td>39. 헬기장 활주로 길이·폭</td><td><table><tr><th>A급</th><th>B급</th><th>C급</th><th>D급 (또는 옥상헬기장)</th></tr><tr><td>90M 이상</td><td>90M 미만 40M 이상</td><td>40M 미만 15M 이상</td><td>항공기 기체 길이의 1.2배로서 최소 15M 이상</td></tr><tr><td>30M 이상</td><td>20M 이상</td><td>15M 이상</td><td>항공기 기체폭의 1.2배</td></tr></table></td><td>○ 항공기 크기의 1.2배 이상으로서 최소 15m 이상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</td><td>항공법 시행규칙 ('13.1월)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49)</td></tr>
</table>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40. 육상헬기장 갓길	○ 활주로·유도로의 양측과 계류장의 가장자리에 갓길(Shoulder)을 설치를 의무화	○ 갓길 설치를 폐지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	항공법 시행규칙 ('13.1월)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49)
41. 지진 분야 비상대처 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 계획 수립 — 1 지진분야 비상대처 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 지정	○ 미지정	○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공항여객터미널 지정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연재해대책법	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('13.1월)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50)
41. 지진 분야 비상대처 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 계획 수립 — 2 지진분야 공항시설 비상대처 계획 수립	○ 미수립	○ 지진으로 전국 15개 공항 여객터미널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지진위험 평가, 긴급대피, 비상운영계획, 긴급복구 등 비상대처계획 수립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연재해대책법	
42. 공항운영자	○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자	○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, 「한국공항공사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·이전받은 자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	항공법 시행규칙 ('13.2월)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55)
43.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	-	○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(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은 100%, 이후 2년간은 50% 감면) ○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	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전면개정 ('13.3월)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(044-201-4377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44.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	○ 수질('10년 기준) - 화학적산소요구량 : 3.8mg/L - 총인 : 0.074mg/L ○ 오염물질 배출량 ('10년 기준) - 화학적 산소요구량 : 7,761.7kg/일 - 총인 : 203.11kg/일	○ 수질 : 화학적 산소요구량(3.3mg/L), 총인(0.065mg/L) ○ 오염물질 배출량('17년 기준) - 화학적 산소요구량 : 7,241.3kg/일 - 총인(193.00kg/일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시화호 총량관리 시행	시화호 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 ('13.7월)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(044-201-4422)
45.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축소 (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)	<분 뇨> 제1호 가목 <분뇨오니> 제1호 다목1 <음식물류 폐기물 폐수> 제1호 라목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중 다음의 것 - 기계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-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료화·퇴비화시설 및 호기성(好氣性)·혐기성(嫌氣性)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10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료제조시설에서 발생된 것을 포함한다)	<삭 제> <삭 제> <삭 제>	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[별표 6] ('13.1월)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(044-201-4427)

여성가족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.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	〈신 설〉	○ 정서·행동장애 청소년들에게 상담, 보호, 치료, 자립, 교육 등 종합적·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"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" 운영(' 12.12.17일 개소) ☞ (참고)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	청소년 복지지원법 ('12.8월) ('12.12.17. 적용)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(02-2075-8613, 8617)
2. 청소년지도사 ·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	〈신 설〉	○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○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'청소년기본법'	청소년기본법 ('13.1.1.)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(02-2075-8614)
3.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	○ 월 5만원 지원	○ 월 7만원으로 인상 지원	한부모가족 지원법 ('13.1.1)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(02-2075-8713)
4.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무기관 확대	○ 유치원, 어린이집, 각급 학교	○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추가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'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	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'13.6.19)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(02-2075-8766)
5.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	○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의료비 지원 ○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호시설 입소기간 동일 ○ 〈신 설〉	○ 피해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 및 자매, 배우자 및 보호자까지 확대 : ('12.10.25.) 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소식>보도해명>보도자료> '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' ○ 장애인은 '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'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: ' 13.6월 시행 ○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의무화 : ' 13. 6월 시행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'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	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기시행/'13.6.19)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(02-2075-8768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6.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·관리 강화	○ 반의사불벌죄(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,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) ○ 성범죄 형량 - 강간 : 5년 이상 - 유사강간 : 3년 이상 - 강제추행 : 1년 이상, 5백만~2천만 벌금 -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: 5년 이상 -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: 2천만원 이하 벌금 -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: 5년 이하, 3천만원 이하 벌금 ○ 공소시효 배제대상 : 13세 미만의 여자, 장애가 있는 여자 ○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범죄 :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~제11조까지의 죄	○ 반의사불벌죄 전면폐지 ○ 성범죄 형량 - 강간 : 무기 또는 5년 이상 - 유사강간 : 5년 이상 - 강제추행 : 2년 이상, 1천만~3천만 벌금 -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: 무기 또는 5년 이상 -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: 1년 이하, 2천만원 이하 벌금 -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:1년~10년, 2천~5천만원 벌금 ○ 공소시효 배제대상 : 13세 미만의 사람, 장애가 있는 사람 ○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범죄 : 아동·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	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('13.6.19)
	○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소지죄 요건 ○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: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,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복지시설 등	○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소지죄 요건 변경 ○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: - (현행)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·체육시설 → (변경)아동·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·체육시설 - 경비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(일반 PC방), 청소년활동기획업소,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	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(02-2075-8783)
	○ 성범죄자 신상등록·공개·고지 -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: 여성가족부 - 성인대상 성범죄 : 법무부	○ 성범죄자 신상등록·공개·고지 - 신상정보 등록 : 법무부 - 신상정보 공개·고지 : 여성가족부	
	○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 : 지역주민과 교육시설의 장	○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 : 읍면동사무소장, 지역아동센터장, 청소년수련시설장,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으로 확대, 경계를 같이 하는 읍·면·동사무소 게시판 게시	
	○ 신상정보 주소공개 범위: 읍·면·동	○ 신상정보 주소공개 범위 :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 ☞ (참고)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자료>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 통과	

고용노동부			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.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	○ 2개 업종 (신재생에너지 산업,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)에 한정하여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	○ 17개업 업종(①신·재생에너지, ②탄소저감 에너지, ③고도 물처리, ④LED 응용, ⑤그린수송시스템, ⑥첨단 그린도시 ⑦방송통신융합산업, ⑧IT융합시스템, ⑨로봇 응용, ⑩신소재·나노 융합, ⑪바이오제약(자원)·의료기기, ⑫고부가 식품산업, ⑬콘텐츠소프트웨어 ⑭글로벌 헬스케어 ⑮글로벌 교육서비스 ⑯녹색금융 ⑰MICE·융합관광)으로 확대 ○ 국내복귀(U턴)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	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('13.1월)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(02-6902-8474)
2.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	○ 6개월 단위로 2회 지원 ○ 고용촉진지원대상이 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제외	○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○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	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('13.1월)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(02-6902-8474)
3.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	○ 사회적기업 1년차 90%, 2년차 80%, 3년차 70%	○ 사회적기업 1년차 90%, 2년차 70%, 3년차 50%	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 ('13. 1월)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(02-2110-7172)
4.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확대	○ 중소기업 청년인턴 4만명 채용	○ 5만명으로 확대(잠정, 예산 심의중) ☞ (참고)www.work.go.kr/intern/	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('13.1월)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(02-2110-7178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5.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	○ 상시근로자수의 15%	○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5% ○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% + 5명 ○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% + 20명 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죈다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, ('12.12월)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2-2110-7306)
6.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	○ '12년 : 월 590,000	○ '13년 기준: 월 626,000 ☞ (참고)전자관보(http://gwanbo.korea.go.kr)>관보 구분별 보기>고시(12.14예정)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,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('13.1월)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2-2110-7313)
7.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	○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/2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	○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무고용인원의 3/4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○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/2 이상이면서 3/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 +부담기초액의 1/4 가산 ☞ (참고)전자관보(http://gwanbo.korea.go.kr)>관보 구분별 보기>고시(12.14예정)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,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('13.1월)
	○ 의무고용인원의 1/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+부담기초액의 1/2 가산	○ 의무고용인원의 1/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+부담기초액의 1/2 가산	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2-2110-7313)
8.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	○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(상시 200명이상 고용 사업주)	○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(상시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)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('13.1월)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2-2110-7313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9.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	-	○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등 에서 1~2개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	('13.1월)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2-2110-7307)
10.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	-	○ 특수학교(급)학생들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훈련 실습을 받도록 지원	('13.1월)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2-2110-7310)
11.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	-	○ '워크투게더 센터'를 통해 학교교육, 복지,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특수학교(급), 전공과, 일반학급 장애학생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* 서비스내용: 직업설계컨설팅, 직업훈련체험, 직업훈련기관 연계, 구직역량강화, 현장체험, 학부모설명회, 장애인식개선 등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장애학생,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	('13.1월)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2-2110-7307)
12.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	○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50% 미만으로 감소 ○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50% 이상 감액	○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 ○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30% 이상 감액	고용보험법시행령 ('13.1월)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(02-2110-7305)
13. 최저임금액 인상	○ 시간급 4,580원	○ 시간급 4,860원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내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4,860원으로 결정	최저임금법 ('13.1.1)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(02-2110-7399)
14.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	○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50 이상 적용	○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100 이상 적용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팜플렛브로셔	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('13.1.1.)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(02-2110-7420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5.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	○ '10~'12년 일부지역에 시범사업 추진	○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○ 위험성평가의 원활히 시행을 위한 지원 강화 - 사업주(모든 사업장) 및 평가담당자교육(100인 미만 사업장) 및 컨설팅(30명 미만 사업장) - 위험성평가 사례집, 모델, 가상체험프로그램 등 관련정보·자료 제공 - 우수사업장으로 인정(소규모 사업장 대상)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 유예, 산재보험료 할인(관련 법 국회 심의 중) 등 인센티브 부여 ☞ (참고) 「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(http://kras.kosha.or.kr)」('13.1.1. 오픈 예정)	산업안전보건법 관련고시 ('13.1.1.)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(02-6922-0913,0914)
16. 안전인증 대상 확대	○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	○ 프레스, 전단기 및 절곡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곤돌라, 기계톱(이동식) ☞ (참고) 고용노동부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·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	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('13.3월)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(02-6922-0935)
17.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확대	○ 원심기, 공기압축기, 곤돌라	○ 연삭기 또는 연마기, 산업용 로봇, 혼합기, 파쇄기 또는 분쇄기, 식품가공용기계, 컨베이어, 자동차정비용 리프트, 공작기계,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, 인쇄기, 기압조절실 ☞ (참고) 고용노동부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·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	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('13.3월)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(02-6922-0935)
18.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	○ 2013년 신규 시행	○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- 지원대상 :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- 지원액 : 업체당 1천만원 이내 ○ 시행일 : 2013년 1월	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시 ('13.1월)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(02-6922-095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9. 석면해체·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	○ 2013년 신규 시행	○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 관한고시(고시 제2012-9호)	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,고시 ('13.1월)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(02-6922-0953)
20.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	○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, 형제자매의 연령을 18세 미만 제한 ○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해당 근로자의 처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나, 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	○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대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, 형제자매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○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남자배우자 연령제한을 삭제 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최근 제개정 법률	산업재해보상보험법 ('12.12.18)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02-2110-7219)
21.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	○ 산재보험 가입 안됨	○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확대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	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('12.11.18)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(02-2110-7223)
방송통신위원회			
1.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전면실시	○ 지상파 TV방송은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 병행 송출	○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완전 종료,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전면 시행 ※ 아날로그방송종료 : '12.12.31. 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공지사항> "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안내"	디지털전환 특별법, 시행령 ('13.1.1.)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(02-750-2337)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2. 통신중계서비스 번호 통합 및 명칭 변경		○ 다수의 접속번호 사용 (1599-0042 등)	○ 단일번호 107번으로 통합 ○ 통신중계서비스를 『107 손말이음』으로명칭 변경 ☞ (참고)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 (http://www.relaycall.or.kr)	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('13.1월) 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활성화팀 (02-750-2542)
3.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			○ 특정 소출력(음성 및 음향 신호전송용)으로 사용되는 740~752MHz의 주파수 대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허용	전파법 고시 ('13.1월)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 (02-750-2271)
4.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강화	1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	○ 인체의 적용부위 : 머리	○ 인체의 적용부위: 머리/몸통/전신/사지로 기준 세분화 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터>법령정보>고시> "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고시"	전자파법 제47조의2 ('13.1월)
	2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	○ 대상기자재 : 휴대전화	○ 대상기자재: 인체 근접(20 ㎝이내) 사용 무선기기로 확대 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터>법령정보>고시> "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"	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 (02-750-2244)
	3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	○ 측정대상: 머리	○ 측정대상: 머리 → 머리, 몸통 ☞ (참고)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>자료실>법령자료실>무선기기> "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"	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/ 관계 부서
5.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	○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수검	○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 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업 정보보호 제도 설명회 개최,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'13.2월) 방송통신 위원회 네트워크 정보보호팀 (02-750-2753)
국가보훈처			
1.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※ 최종금액 및 인상률 등 변동될 수 있음		○ 보상금 : 2012년 대비 4% 인상 ○ 중상이부가수당 : 2012년 대비 5~15%인상 ○ 참전·무공영예수당 : 2012년 대비 각 2만원 인상 ☞ (참고) 국가보훈처 홈페이지>보훈지원>보훈급여금>2013년 보훈급여금 지급액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3.1.1.)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(02-2020-5179)
금융위원회			
1. 실손 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	1 실손 의료보험 상품형태	○ 다른 보장과 함께 특약 형태로 판매 중 (통합상품 형태)	○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 병행 판매 : 소비자가 단독 또는 통합상품 선택 가능 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보험업감독규정 개정	보험업감독규정 ('13.1월) 금융위원회 보험과 (02-2156-9831)
	2 실손 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종류	○ 자기부담금 10%인 상품만 판매	○ 자기부담금 10% 또는 20%인 상품 동시 판매 ☞ (참고) 상 동	
	3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 변경	○ 대부분 3년마다 변경	○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적정성을 검증하여 매년 변경 ☞ (참고) 상 동	
	4 실손 의료보험 보장내용 변경	○ 특정연령(예:100세)까지 동일 보장* * 보험료 인상폭이 커서 고연령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사실상 불가능	○ 보장내용 변경주기(보험기간)를 15년 이내로 설정하고, 재가입 안내 ☞ (참고) 상 동	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/ 관계 부서
2.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	1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	○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만 18세 이상인 자는 신용카드 발급가능	○ 일정한 신용도(개인신용 1~6등급)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 ☞ (참고)금융위원회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	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('12.10.15)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02-2156-9856)
	2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	○ 카드회원 및 발급 신청자의 결제능력 평가기준에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	○ 가처분 소득(월 소득-월 채무상환금)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을 평가기준에 포함 ☞ (참고)상동	
3.「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」 시행		○ 제한 없음	○ 대부중개수수료를 5%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	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('13.6.12)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02-2156-9475)
4.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		○ 기업어음증권(CP) 실물 발행	○ 기업어음증권(CP)의 문제점*을 해결하기 위한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·시행 * 실물발행 위험, 유통의 불편함, 투자자 보호 미흡 ※ 현행 기업어음증권(CP)제도는 병행 유지 ☞ (참고)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	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('13.1.15)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(02-2156-9874)

관세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/ 관계 부서
1.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사전 이수제도를 폐지	○ 3년 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 응시 가능	○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기본교육 이수 없이 보세사 시험 응시 가능	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('13년)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(042-481-7906)

병무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. 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	○ 수도권지역 위치 (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)	○ 대구혁신도시(대구 동구 동내동 384) - 이전 : 2012.12.21. - 대중교통 노선 개설시까지 자체 승합차 운행 - 음식점 등 모범업소 파악, 통지서 교부 시 사전 안내	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('12.12.21.) 병무청 징병검사과 (042-481-2918)
2.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후속처리 강화	○ 장애인 등록자는 병역감면 시점의 등록 사실 등을 확인하여 병역처분	○ 장애인 등록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후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 실시	병역법 시행령 ('12.12.20) 병무청 징병검사과 (042-481-2946)
3. 해양경찰 선발업무 해양경찰청 이관	○ 병무청장이 해양경찰순경 모집·선발	○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순경 모집·선발 후 병무청장에게 추천 ☞ (참고)해양경찰청 홈페이지>뉴스소식>공지/공고>해양경찰 전경 모집계획 알림	병역법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('13년 입영자부터) 병무청 현역입영과 (042-481-2738)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(032-835-2736)
4.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	○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 한함 (이혼자, 미혼자 제외)	○ 자녀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이혼자, 미혼자도 포함	현역병 입영 업무 규정 ('13.1.1.) 병무청 현역입영과 (042-481-2716)
5.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	○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 기준 : 총톤수 200톤 이상	○ 총톤수 100톤 이상으로 조정	병역법 시행령 ('12.12.20.) 병무청 산업지원과 (042-481-277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6.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	○ 편입지원 시기 - 편입되는 해의 2월10일까지 ○ 편입지원 절차 - 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	○ 편입지원 시기 - 편입되는 해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○ 편입지원 절차 - 본인이 직접 병무청장에게 제출	병역법 시행령 ('12.12.20.) 병무청 산업지원과 (042-481-2771)
7. '유학'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	○ '유학'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은 28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 ○ 29세 되는 해 6월말까지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할 경우 그때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	○ '유학'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은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 ○ 30세 되는 해 6월말까지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할 경우 그때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	병역법 시행령 ('12.12.20) 병무청 병역자원과 (042-481-2965)
8.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 시 허가취소	〈신 설〉	○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'국외이주'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국내 체재 시 국외여행허가 취소	병역법 시행령 ('12.12.20) 병무청 병역자원과 (042-481-2965)
9.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시기 변경	○ 접수 : 매년 3월	○ 접수 : 매년 2월 ☞ (참고)병무청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	병역명문가 선정 및 운영규정 ('13.2월)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 (042-481-2992~3)
10.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조정	○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	○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를 마친 모든 여성 및 비군인 신분으로 6·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선정기준에 포함 ☞ (참고)병무청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	병역명문가 선정 및 운영규정 ('13년)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 (042-481-2992~3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1. 예술경연대회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예술요원 추천기준 명확화	○ 예술요원 편입기준 -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,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※ 동점자, 공동수상자,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공동수상자에 대한 추천기준이 불명확	○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예술요원 추천기준 명확화 -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성적순으로 2위이상 입상한 사람 -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성적순으로 1위로 입상한 사람	병역법 시행령 ('13.1월, 잠정)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(042-481-3005)
12. 사회복지시설 장의 직계비속 복무기관 지정 개선	〈신 설〉	○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직계비속인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지 아니하도록 복무기관을 지정	병무청 훈령 (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) ('13.1.1.)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(042-481-3007)
방위사업청			
1.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	○ 계약상대자의 실제 발생한 노무비 전액 인정	○「근로기준법」,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 및 해당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방산원가 계산 시 불인정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('13. 2월)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(02-2079-6445)
2.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	〈신 설〉	○「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생산성경영 인증 취득 업체에 대해 인증등급 별 추가이윤 보상(최대 1%p)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('13. 1월)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(02-2079-6445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3.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	〈신 설〉	○ 상용품 적용 및 상용·성능형 규격 전환 등을 통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% 이상 절감 시 향후 5년간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, 동 시행세칙 ('13.2월)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(02-2079-6445)
4.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	○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은 2년간 일반관리비로 보상 ○ 방산원가 계산 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	○ 중소기업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 일부(50%)를 계약 시 직접 지원 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, 동 시행세칙 ('13. 2월)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(02-2079-6445)
5.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	○ 방산총원가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라 방산수출에 대한 이윤 보상 ○ 해외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 지원 (지원율 : 100%)	○ 현행과 같이 방산총원가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라 방산수출에 대한 이윤을 보상하되, 최초수출·수출확대 기업은 추가이윤(0.5%p) 보상 ○ 해외 시험평가비 지원기준 구체화, 지원범위에 유류·탄약비 추가, 업체 분담비율(10%) 설정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,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('13.1월)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(02-2079-6445)
6.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	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의 중소기업인 경우 기술료 50% 감면	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 중 그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액의 50% 감면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방위사업 관리규정 ('13.2월)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(02-2079-6454)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/ 관계 부서
7. 「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 개정	1 경찰용·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	○ 미적용대상	○ 국가기관 항공기(경찰용·세관용)의 군 감항 인증 준용 - 군용으로 개발 및 운용 중이던 항공기를 경찰 및 세관용으로 개조 시 비행안전성을 국가에서 인증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	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('13.3.19)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(02-2079-6707)
	2 기존 운용 중인 군용 항공기의 감항인증	○ 미적용대상	○ 법 시행이전('09.7.31)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의 개조·개량 시에 개조·개량되는 부분의 비행안전성을 정부에서 인증 가능토록 함.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	
	3 단계별 감항성 심사 구체화	○ 미구체화	○ 개정 법률 제4조제5항의 단계별 감항성 심사 절차를 설계단계의 형식인증과 양산단계의 생산확인으로 구체화하여 감항인증 절차의 투명성 제고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	
	4 수수료 부과대상 확대	○ 수출용 군용항공기만 수수료 부과	○ 수출용 군용항공기에만 부과하던 수수료를 국내판매용의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. ※ 수수료율 : 판매가의 1/10,000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	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8.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		〈신 설〉	○ 품질하자 예방을 위하여 신규조달 및 성능개량 품목 등에 대하여 시제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 및 검사절차 추가	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('12.12월)
		〈신 설〉	○ 업체 요청 시 입찰공고 이전에도 시제품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	
		○ 면제제외 규정 미운용	○ 계약불이행업체, 규격면제업체를 업체 생산·정비능력 확인 면제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, 면제제외 기간을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까지로 규정	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(02-2079-4123)
		〈신 설〉	○ 업체 생산·정비능력 확인을 위한 설비 및인력 보유기준일 명시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
경찰청				
1. 경범죄 처벌법 개정시행	1 통고처분 대상 확대	○ 17개 항목은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- 28개 항목은 즉결심판 ※ 통고처분 항목은 즉결심판도 가능하나 즉결심판 항목은 통고처분 불가	○ 45개 항목으로 통고처분 확대 ☞ 통고처분 대상이 되어 적발시 범칙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절차 종료	경범죄처벌법 ('12.3월) 경찰청 생활질서과 (02-3150-1355)
	2 처벌행위	○ 처벌근거 없음	○ 관공서 주취소란시 60만원 이하 벌금, 구류, 과료로 처벌 ○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등 행위시 10만원 이하 벌금, 구류, 과료로 처벌 ○ 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시 10만원 이하 벌금, 구류, 과료로 처벌	
	3 열차내 위반행위 즉시 단속	○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단속권한이 없어 열차내 위반행위 즉시 단속 곤란 ※ 철도특별사법경찰이 현장 억류 후 정차역 인근의 지구대로 인계	○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위반자에 즉시 통고처분 등 조치 가능	

소방방재청

구 분	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/ 관계 부서
1.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시행	1 화재 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 시기	-	○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- 신규다중이용업소 : 2013. 2.23부터 - 기존다중이용업소 : 2013. 2.23 ~ 8.22 까지 ※ 150㎡ 미만 휴게·일반음식점, 게임제공업 PC방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. 2.23부터	다중이용업소의전 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('13.2월)
	2 화재 배상책임 보험의 보험금 (보상 한도액)	-	○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(보상한도액) -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 ※ 1사고당 사망자수 무한 - 부상자 최대 2천만원 보상 - 후유장애 최대 1억원 보상 - 재산피해 최대 1억원 보상	소방방제청 소방제도과 (02-2100-5338)
2.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	1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상향	○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: 21세 이상 30세 이하 ○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: 21세 이상 30세 이하 ○ 소방사 특별채용시험 : 20세 이상 30세 이하 ○ 소방장·소방교 특별채용시험 : 20세 이상 35세 이하	○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: 21세 이상 40세 이하 ○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: 21세 이상 40세 이하 ○ 소방사 특별채용시험 : 20세 이상 40세 이하 ○ 소방장·소방교 특별채용시험 : 20세 이상 40세 이하	소방공무원 임용령 ('13. 1.1)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(02-2100-5316)
	2 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변경	○ 필수(5과목) : 국어, 한국사, 영어, 소방학개론, 행정법총론	○ 필수(3과목) : 국어, 한국사, 영어 ○ 선택(2과목) : 소방학개론, 행정법총론, 소방관계법규, 사회, 과학, 수학	

산림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.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	〈신 설〉	○ 입목·죽을 벌채·제재·유통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	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('13.5.24) 산림청 목재생산과 (042-481-4204, 8875)
2. 산림 교육전문 가자격증 발급 — 2 산림 교육 전문가 자격 증발급	〈신 설〉	○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 -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함	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('13.상반기)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(042-481-4216)
3 산림교육 전문가양성기관 지정	〈신 설〉	○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 - 숲해설가 전문과정(170시간이상),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(210시간이상),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(130시간 이상)	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('12.7.26)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(042-481-4216)
3.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	○ 금지구역 3km	○ 금지구역 2km로 축소 ☞ (참고) 「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」 시행령 제3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7조	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('12.12월) 산림병해충과 (042-481-4076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4. 목재펠릿 보급 대상 확대	○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농산어촌 거주자만 설치 가능	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도시 지역에도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가능	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기준 ('13.1.1시행)
	○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만 설치 가능	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편의 및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도 설치 가능	산림청 목재생산과 (042-481-4201)
중소기업청			
1.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확대	1 구조 개편	○ 지역사업(지자체 매칭) ○ 전국사업 ○ 국제사업 ○ 중점사업 ○ 기업부설연구소 사업	○ 첫걸음 기술개발(지자체 매칭) ○ 도약 기술개발	관리지침 ('13.1월)
	2 수요자 선택방식 도입	○ 대학·연구기관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행	○ 참여기업이 단독 신청한 후 대학·연구기관을 선택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행	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(042-481-4453)
	3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	〈없 음〉	○ 참여기업 건강진단을 통한 적합 R&D 결정	
	4 상시 지원체계 도입	○ 연 1회 신청	○ 매월 신청(1월~9월)	
2.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		〈신 설〉	○ 지원분야 : 공동브랜드, 공동마케팅, 공동설비, 공동구매, 기술개발 등 ○ 지원업종 : 빵집제과, 세탁소, 꽃집, 이미용, 공예, 가구 등 10개 업종(시범운영) ○ 지원규모 : 협동조합 당 일정규모(예시 : 1억원 한도) 한도 내(국비 80%, 자부담 20%) ○ 지원절차 : 자발적협업체 신청→교육·컨설팅→조합설립→사업신청→선정→지원→성과평가	2013년도 협업화 지원사업 공고 ('13. 1월 잠정)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(042-481-4491)

특허청			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.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	○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없음	○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의 출원료·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% 감면	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('13.1.1.)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(042-481-5195)
2.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	○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: 기업은행만 실시 ○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: 연차등록료만 실시	○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농협은행으로 추가 확대 ○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를 설정등록료로 추가 확대	-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(042-481-5195)
3.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	○ 특허청 사설인증서 및 일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문서 이용신고	○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 중단 ○ 공인인증서만을 통한 전자문서 이용신고	특허법 시행규칙 ('13.1월)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(042-481-8238)
식품의약품안전청			
1.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일원화	○ 부작용 보고기관 - 보고기관 : 한국소비자연맹(소비자),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(영업자), 식품의약품안전청(의료전문가)	○ 부작용 보고기관 일원화 - 보고기관 : 식품안전정보원	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'13.1월)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(043-719-2257)